

제425회 국회  
(임시회)

법 제사법위원회 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5월7일(수)

장 소 법 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56)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69)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33)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정춘생 의원·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94)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정춘생 의원·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9)
-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서영교 의원·정춘생 의원·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36)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44)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72)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21)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967)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500)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390)

**상정된 안건**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56) ..... 2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33) ..... 20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정춘생 의원·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94) ..... 36
-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정춘생 의원·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9) ..... 40
-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서영교 의원·정춘생 의원·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36) ..... 50

---

(10시05분 개의)

○ 소위원장 박범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은 여기까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

1.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56)

(10시06분)

○ 소위원장 박범계 의사일정 제1항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정환철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제1항 검사징계법 일부개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자료를 봄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2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검사 징계 청구권자에 법무부장관을 추가하는 내용 등입니다.

현재 검찰총장만 청구할 수 있는 검사 징계를 법무부장관도 모든 검사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자요. 검사가 징계사유 해당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감찰관에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3쪽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검사 징계와 관련해서 법무부장관에게도 청구권을 부여해서 국민의 인권 보호라든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입법취지가 인정됩니다. 다만 개정안과 관련돼서 검찰총장의 기존의 단독 징계 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대해서 제대로 행사되지 않는 것을 견제할 수는 있겠지만 또 검사의 직무상 독립성·중립성에 대한 간접으로 이해되는 부분도 있다는 측면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현행법은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는 검찰총장이 하고 징계 심의·의결은 법무부장관이 관할하도록 하는 규정 체제로 돼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에게 청구권을 부여하도록 돼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이 당초 어떤 입법 설계하고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고요. 현행법 각주를 보시면 법무부장관을 제외한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 8인 중에 과반수인 5명이 법무부차관, 법무부 소속 검사 2인 등 법무부 소속이거나 법무부장관이 직접 선정하는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각주 2번에 나타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에게 개별 검사 징계 청구권까지 부여할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징계 심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도 추가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사유에 위원장이 징계를 청구한 경우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5조 6항을 보시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 지정 위원이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은 위원장 직무대리에 이러한 기존 사유에다가 위원장이 징계를 청구한 경우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 취지의 검토보고 요지를 말씀드리면 징계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서 위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현행 제17조 2항을 보시면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법무부장관도 이미 현행 법상 징계 청구권자가 될 경우에는 징계 심의에서 위원장으로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굳이 규정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박범계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오늘 김석우 법무부차관,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께서 출석하였습니다.

양 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부차관 김석우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7조 1항은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2항은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는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권한과 징계 의결을 하는 권한으로 양분화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탄핵주의에 입각해서 소추와 심판이 분리돼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비추어 봤을 때 검사징계법상으로 징계 청구로 표현이 돼 있는데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권한과 한편으로는 징계위원회 구성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한 사람한테 귀속된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와 좀 배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각부의 장이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인사혁신처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중앙징계위원회가 의결을 하는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난번 추미애 장관 시절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처분이 항소심에서 위법하다고 된 가장 큰 이유로 세 가지가 지적이 됐습니다. 첫 번째, 추미애 장관이 징계 심의 기일을 변경했다는 점이 있고, 두 번째가 정한중 위원을 징계위원으로 선임했다는 것, 세 번째가 위원장대리로 선임했다는 부분인데 당시 항소심 판결문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징계 청구자라고 하는 당사자 지위에 있는 법무부장관이 판단의 주체나 판단 기관의 구성권자로서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설시했고 또 한편으로는 ‘심의할 징계위원회 구성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를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그 직무를 대리할지는 징계사건의 심의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위원장은 자신의 의사에 맞춰 위원장 직무를 대리할 만한 위원을 지정함으로써 사실상 징계 청구자 제척 규정을 무력화할 수 있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당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나라 국가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책임을 보장하고 신분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징계 요구 절차와 징계 절차가 분리돼 있는 측면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법안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한 가지가 우리나라의 검사는……

○**소위원장 박범계**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법무부차관 김석우** 두 번째는 검사의 준사법기관적인 지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고려할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 별도의 징계법이 있는 직책은 판사하고 검사밖에 없습니다. 56년도에 판사징계법이 제정됐고 57년도에 검사징계법이 제정된 것은 판사와 검사에 대한 어떤 책임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고 검사는 준사법적인 기관이라는 것을 강조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개개의 사건에 대해서 지휘권이 없는 법무부장관이 직접 감찰을 지시하고 더 나아가서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청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검찰의 책임성, 자율성, 권한 보장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1957년도에 검사징계법이 제정됐습니다만, 재의 요구되긴 했습니다만 애초에 1951년도에 정부 원안 자체에도 이 법안과 같이 검사에 대한 징계 요구권한을 법무부장관에게도 주는 안이 제출됐다가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이런 점을 비추어 보더라도 인사권을 행사하고 총장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사건의 지휘권을 가지는 법무부장관이 전국의 모든 검사들에 대해서 직접 징계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체계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법원행정처처장 배형원** 검사의 징계 청구권자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여야 할지 여부는 검찰조직, 직무 및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법부의 중립성 및 독립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우 위원** 법무부차관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주진우 위원님, 지금 속기록에 넣으라고 제가 ‘주진우 위원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진우 위원** 예.

징계를 청구하는 사람과 징계를 결정해서 심판하는 사람이 분리되지 않은 징계 절차가 현행법 체계하에서 또 있습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없습니다.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주진우 위원** 그러면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법안이 통과돼서 시행된다면 유일하게 법무부장관이 징계 청구를 하고 또 법무부장관이 지명한 사람이 징계위원회를 이끌어서 법무부 산하에서 징계를 최종 결정하는, 일종의 규문주의처럼 되는 것이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주진우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검찰 수사의 독립성 때문에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놨는데 지금 법무부장관이 일반적인 인사권하고, 현재 수사와 관련된 지휘권은 검찰총장한테만 지휘권이 있는 것이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주진우 위원** 그런데 지금 지휘권도 그렇게 제한돼 있는데 징계 권한을 법무부장관이

직접 갖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기본적으로 검사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를 장관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지위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총장을 통해서만 지휘가 가능한 것으로 법상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검사가 판사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준하는 정도의 어떤 독립성을 구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의 활동의 독립성, 자율, 책임 보장 등의 측면에 비춰 봤을 때 개개의 검사에 대한 징계 요구 자체를 총장을 배제한 상태에서 장관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개개의 검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검찰 활동의 자율성 다음에 신분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진우 위원** 저는 이 법안에 반대 입장인데요. 첫 번째는 모든 징계 절차가 법상 체계가 동일해야 되는데 이것만 유독 징계권자와 그 징계를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동일해지는 문제가 있어서, 후진적인 법안에서도 이렇게 만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하자가 법률안에 있고.

두 번째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통 법을 개정하고 개혁해 나가는데 오히려 역행하는 부분이 있고 정치권력에 예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는 명백히 반대합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박균택 위원님.**

○**박균택 위원** 차관님, 청구권자와 징계권자가 구분돼야 한다는 취지로 지금 하신 말씀인 거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면 법관징계법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청구권자가 누구이고 징계위원회를 위촉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제가 알기로는 법관의 경우에는 청구권자에는 대법원장도 있고 대법관 등등도 있고 징계위원회는 별도로 대법원 내에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니까 다 대법원장이 하는 일 아닙니까, 대법원 내에서?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박균택 위원** 그러면 검사의 지위를 법관에 준해서 생각한다고 한다면 법관징계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따르는 것이 뭐가 문제일까요? 오히려 검찰에 감찰부장 별도로 둬서 검찰에게 감찰의 준독립성을 거의 주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것도 대법원에 비하면 특별한 배려인 것 같은데 지금 새 제도가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일까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기본적으로 법관징계법과, 말씀하시는 부분은 법관과 검사의 지위가 완전히 동일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동일하게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가공무원의 전반적인, 일반적인 대원칙 자체가 징계의결 요구, 징계 청구라고 하는 징계 청구와 심판이 분리가 되어 있는 게 국가공무원의 대원칙이고 법원의 경우에는 대법원 내에 징계위원회가 있고 징계 요구권자 자체에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점과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국가공무원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보면 일반적인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은 좀 신중할 필

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박균택 위원** 나는 검사징계법이 법관징계법의 입법 취지와 같은 이유로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법관징계법을 따라가기 위해서 대검에 감찰부도 없애고 징계권, 징계 조사권·청구권 또 심의권을 다 법무부에 두는 것이 맞지 않나 싶네요. 대법원은 가능한데 왜 법무·검찰은 불가능합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법원의 경우에는 개개의 판사가 헌법상으로 독립성을 부여받고 있는 사항이고 검찰과 같은 법무부 산하에 있는 외청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차이는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지요. 검찰을 제외한, 외청에 감찰관을 별도로 두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 부분은 좀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것 부처 소관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어쨌든 이 법원 사례를 따진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검찰이 과도한 특혜를 받고 있다, 대검에다가 징계조사권을 두고 있는 것 그 자체도 과도한 혜택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검찰총장을 청구권자로 유일하게 해 놓다 보니까 검찰총장이, 과거에 윤석열 검사처럼 검찰총장 자체가 사고를 쳤을 때 이것을 누가 견제할 것인가 이 문제를 생각하면 반드시 이 규정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왜 문제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러니까 제가 가장 첫 번째 드린 말씀은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 체제 자체가 의결을 요구하는 기관과 의결을 하는 기관은 소속 자체가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게 원칙인 점을 비춰 봤을 때 이 법안의 취지는 거기에 좀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박균택 위원** 판사의 독립성을 더 보장해야 할 법원에서도 하나의 기관이 징계 조사와 징계 심의를 함께 하고 있는데 왜 법무·검찰은 안 되느냐 이거지요. 오히려 지금 더 법무부로 모아 줘야 할 상황 아니냐, 대검 감찰부 폐지까지도 고려하고 감찰관실로 기능을 통합해 주는 것이 검찰의 성역을 없애는 데도 더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 그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그러면 검찰총장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누가 징계해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지금 법무부장관이, 그건 현행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때 추미애 장관 시절에 위법하다고 판단된 것은 위원장대리를 차관이 원래 하는 게 원칙인데 위원장대리를 임의로 선정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당시에 봤었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면 징계 청구권을 아까 문제 삼아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었습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 사안에서는 절차를 제가, 그 판결에서도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자신을 대리할 사람을 임의로 지정하는 것 자체가 적법절차 원칙 성에 비춰 봤을 때 위반된다는 판단이 있었고 그 판단은 이 법안 논의할 때 참고가 돼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박균택 위원** 이번처럼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윤석열 피고인 석방에 협조했던 검사들을 만약에 우리가 징계를 해야 한다고 보면 검찰총장은 당연히 자기 말을 듣고서 비리를 저질렀으니까 징계 청구를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경우에는 누가 그 징계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합니까? 검사의 독립성을 위해서 법무부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둬야 합니까? 그러면 결국은 검찰총장에게 검찰을 혼자 감싸고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아성을 만들어 주는 결과가 될 것 같은데 그게 타당한지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법무부차관 김석우** 징계 청구권이 총장에게 있다는 것은 권한이자 책임이기 때문에 징계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 자체가 부당하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지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렇다 해서 징계 청구권자가 지금 검찰총장으로 일원화되어 있는 부분을 법무부장관에게까지 부여하는 방안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한 가지, 내가 다 경험한 얘기니까.

예를 들어서 행안부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비위 혐의가 감사원에서 적발되든 자체, 행안부 안에도 감사관이 다 있어요. 그런데 아까 차관이 두루뭉술해서 공무원들은 뭐 요청권자와 심의권자가 다르다, 결정권자가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어디가 그게 있어요? 행안부 안에서 자체 행안부 소속 공무원을 감찰관이 징계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러니까 현재 국가공무원……

○**소위원장 박범계** 자, 상대의 말을 좀 경청하고.

행안부 안에서 소속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것이 적발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행안부 감찰관이 그것을 적발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징계 요구를 하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그런 경우에 그 징계를 누가 해요, 심의를 누가 하고? 그것은 자체……

○**법무부차관 김석우** 5급 이상의 경우에는 행안부장관이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소위원장 박범계** 예, 얘기해 보십시오.

○**법무부차관 김석우** 5급 이상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상 소속기관의, 행정각부의 장이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고 징계 의결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인사혁신처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소위 규문주의를 여기다 쓸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 경우는 분리가 되어 있는 게 확인하지 않습니까. 소속 자체도 징계위원회 자체는 총리 소속이고 징계 요구를 행사하는 것은 행안부장관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아까 행안부장관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뭐예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아니, 행안부장관이 징계 의결을 요구를 하고, 5급 이상 소속 공무원의 비위가 발생했을 때는. 징계 의결 자체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있는 징계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 법무부 내에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있는 중앙징계위원회로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무부 소속 내에 있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하는 데 차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그렇고.

차장님, 박군택 위원님 지금 질문한 것처럼 법관 징계는 어떻게 합니까? 법관이든 뭐……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우선 법관과 일반직 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는 구별되고 있고

요. 일반직의 경우에 있어서는 직급에 따라서 보통징계위원회와 고등징계위원회로 나뉘지고 있습니다. 그 청구권자는 좀 더 복잡하고요.

법관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법관에 대한 징계 청구권자는 대법원장, 대법관 그리고 그 법관이 소속된 사법행정권자, 즉 법원장들이 징계 청구권자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산하에 법관징계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돼 있어서, 위원장과 위원 여섯 사람으로 법관징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그렇게 하면 규문주의입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청구권자와 위원회 위원 구성을 달리는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아니, 규문주의냐고요. 규문주의가 그럴 때 쓰는 개념입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거는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위원님, 심의하십시오.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법원은 사법부로서 별도의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징계 의결 절차를 할 수 있는 위원회는 대법원 내에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행정 부처는 다양한 기관이 있기 때문에 징계 청구권자는 각 부처가 되지만 징계 의결을 위한 중앙징계 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에 중앙징계위원회를 두고 거기서 의결을 하는 것이지요.

중요한 거는 법원에서도 각 기관의 장이나 대법원장이 징계 청구를 하더라도 징계 청구권자가 징계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맞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거는 소위 탄핵 절차에 있어서 청구권자와 의결권자는 분리돼야 된다는 그 대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건 맞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유상범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검사징계법의 문제는 뭐냐 하면 법무부장관이 청구도 하고 의결도 할 수 있는, 또 그 의결에 본인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결국 본인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다수를 차지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일반 징계 절차에서 규정하는 원칙에 맞지 않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단순하게 법원이 마치 법원 내에 징계위원회를 두었는데 그거는 청구권자·의결권자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니까 검찰도 문제가 없다 이 주장 자체는 굉장히 논리적인 비약이고 적절치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반대하는 입장이고 충분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합니다.

저는 그 외에 오늘 올라온 여러 가지 법률 중에 3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우리가 속칭 이재명 재판 정지법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기회에.

○**소위원장 박범계** 아직 그건 부의도 안 했는데…… 의사진행과 관련된 질의 같으신데요, 조금만 기다려 봐 보십시오.

○**유상범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아니, 이 부분은 좀 추가로 그냥 마이크 잡은 김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아니, 마이크는 잡지 마시고……

○유상범 위원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소위원장 박범계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이 검사징계법 같은 경우에 제 경험으로 검사를 마땅히 징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계 청구권자와 심의권자가 분리되어 있어서 대검에서 징계 요청이 안 와요. 하세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그런 경우 어떡합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규문주의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문제라면 결국은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완전히 연대 관계, 다 말아먹는 관계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똑똑히 그런 역사의 현장을 봤잖아요.

그런데 감독기관의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인 법무부의 기능으로 놓고 보면 마땅히 국민과 객관적인 사실관계에서도 징계함이 마땅한데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징계 안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예외적인 사유가 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주 예외적으로 이 검사징계법의 거의 직무 유기에 가까운, 사실은 직무 유기 정도가 아니지요. 직접 가담해서 여러 가지 감찰을 방해한 사례들이 꽤 있었습니다.

우리 이성윤 위원님 너무 잘 아실 건데 그런 예외적인 사안에 있어서 조차도 검찰 내부에서의 감찰 방해 내지는 감찰을 사실상 해태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경우에 예외적으로는 검찰에 대한 지휘 감독권자인 법무부장관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고, 다만 그 징계 요구에 따른 심의·의결은 그 요청권자, 그 당시 그 사안에 대한 요청권자인 법무부장관이 심의·의결에서 빠지는 그런 구조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안 올라오니까 문제입니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아무리 편을 드는 검사라도 이 사안은 좀 심했어. 이거는 마땅히 징계해야 됨이 마땅해. 그런데 대검에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런 사안인 경우는 징계를 하는 게 마땅하다. 그래서 소위 규문주의 이론을 지금 들이대고 어찌고저찌고하는데 글쎄, 지난 3년 과연 검사들이 법무부 또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그렇게 공정하게 업무 수행을 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성윤 위원님.

○이성윤 위원 차관님.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이성윤 위원 오늘 차관님 말씀 들어 보니까 이 검사징계법은 반드시 폐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차관님, 검사징계법이 다른 일반 수십만 명의 공무원에 비해서 어떤 특혜를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아시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특혜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좀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윤 위원 검사징계법에는 파면이 없어요. 아시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이성윤 위원 다른 공무원들은 다 파면합니다. 차관님 말씀처럼 만약에 분리돼 있다면 검사들도 파면을 많이 썼겠지요. 그런데 파면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검사에 대한 특혜라고 보는 국민들이 많이 있어요.

차관님도 검사 징계 한번 받아 보셨습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징계위원회에 관여를 한 사실은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직접 한번 받아 보세요. 제가 검사 징계를 받아 가지고 해임돼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김학의 사건에 관련해서 또 윤석열 징계를 주었다고 해 가지고 징계를 받았는데 정작 징계할 사람들은 대검에서 청구조차 안 했어요.

그리고 결국 징계 시효 한 달 남겨 놓고 청구조차 안 해 버린 바람에 윤석열에, 대검에 잘못 보인 사람들은 계속 지금까지 징계 소송하고 돈 들어가고 그리고 있고, 그 사람들은 징계 시효가 지나서 형사처벌밖에 못 할 상황이 온 겁니다. 대검에 맡겨 놓으면 이런 일이 생겨요.

한 번 더 볼까요?

이정현 검사장 징계했지요? 정진웅 검사 징계했지요? 정진웅 검사 처음에 한동훈 검사장 밀쳤다고 해 가지고 기소해 놓고 징계했어요. 중단시켰지요. 무죄가 나니까 또 어떻게 했습니까? 또 징계했습니다, 언론 대응 이상하게 했다고 해 가지고 품위 손상했다고 또 징계했어요. 아니, 뒤틀 작렬이에요. 윤석열에 반대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찬성한 사람들은 징계조차 안 했어요.

최근에 이정현 검사장 징계했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이성윤 위원 그게 잘된 겁니까? 잘됐다고 생각하세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 부분의 판단은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한 부분이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러면 잘했네요. 차관님 말씀대로 규문주의가 아니고 법무부에서 잘한 거네.

그렇게 징계권이 검찰에 의해서 검사를 감싸고 징계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과거에 윤석열 총장을 징계했는데 당시 위원장이 추미애 장관인데 1심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비위를 저질러도 징계위원장 추미애 장관은 심의 기일조차 지정할 수 없는 결과가 돼요. 차관님 말씀처럼 2심 판단이 옳다고 본다면 총장은 무슨 짓을 해도 징계를 못 하는 결과가 돼요. 아십니까? 1심에서는 정당하다고 봤어요. 심의 자체에만 관여하지 않으면 심의 기일 지정을 해야지요. 어떻게 기일 지정을 못 합니까? 그 기일 지정 자체를 심의에 관여한 것으로 봐서 부적법하다고 본 겁니다. 2심 판결을 잘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적법하다고 봤던 1심 판결이 적절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같은 총장이 비위를 저질렀을 때 징계 청구권자는 한 사람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누가 청구할 거예요, 그러면?

○법무부차관 김석우 현행법상은 장관이 가능합니다.

○이성윤 위원 장관이 지금 못 합니다. 심의 기일도 지정 못 한다니까요. 2심 판결 똑바로 좀 보세요. 심의 기일 지정 때문에, 지정도 안 된다고 해 봤어요. 물론 정한중 대리 임명한 것도 잘못했다고 봤지만 장관이, 징계 청구권자가 징계 심의 기일 자체를 지정하는 거 그것도 위법하다고 봤어요. 아세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러면 징계 못 하는 거지요. 누가 징계 어떻게 해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징계……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차관이 위원장대리를 해서 가능합니다.

○이성윤 위원 아니, 차관한테 대리 지명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아니, 그건 아닙니다. 항소심 판결문상으로는 차관이 하는 것은 가능한데 임의로 지정하는 게 위법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성윤 위원 누가 임의로 지정을, 그러면 어떻게…… 법적으로도 언제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까? 장관이 심의 기일 지정, 누구누구 할 수 있다면 대리도 지정할 수 있는 거지요. 1심에서는 바보입니까, 1심 재판부는? 그조차 항소심 상고해 가지고 1심이 맞는지 2심이 맞는지 판단받지도 않는, 그것도 포기했잖아요, 법무부에서. 그래 놓고 여기 와서 법 개정 반대하고 있어요? 법원에서 1심에서는 적법하고 항소심에서는 부적법했으면 상고해서 당연히 다퉈 봐야지요. 그래 놓고 상고도 안 해 놓고 여기 와서는 규문주의라고요? 왜 1심 판결은 얘기 안 합니까?

검사들은 봐주고, 검찰청 직원들은 봐주고 반대하는 사람만, 밍보인 사람만 징계하는 바람에 이런 결과가 생긴 거고 이런 상태라면 검찰총장의 비위는 징계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법이 개정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 위원 저는 맨 처음에 법을 설계하신 분들은 그 입법 목적과 취지가 있고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꾸려면 본래 법을 만들 때 법에 담았던 그 가치를 버리고 다른 가치를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만한 충분한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비교 형량 했을 때 월등한 그런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원의 경우에 법원 내에서 물론 징계를 청구하는 사람과 징계를 의결하는 기관이 별도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걸 다른 기관에서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독립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법관들에게 그 법관의 징계를 하도록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경우는, 검사의 경우는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청구하는 청구권자와 의결하는 의결권자를 지금 분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검사의 직무상 수사에 있어서 독립을, 징계를 통해서 직무에 관여하는 것들을 배제하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본래의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그 가치는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검찰총장의 경우에 지난번 징계 소송에서 입법에 불비가 있다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다면 검찰총장에 한해서 입법적·제도적 보완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 한 건을 가지고 모든 검사에 대해서 제도 자체를 바꾸는 것은 저는 과도한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청구권자와 의결권자를 분리해 놓음으로 인해서 다소간에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은 본래 검사가 독립돼서 중립성을 지키면서 누군가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고 수사를 하도록 하겠다는 더 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검찰총장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 이 제도적 보완을 해야 된다라거나 아니면 청구권자를 검찰총장으로 두되 그 내에서 어떤 제도적 보완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것을 완

전히 바꾸는 것은 다른 더 큰 법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박희승 위원님.

○**박희승 위원** 차관님.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박희승 위원** 왜 이런 법 개정이 필요한지 그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아까 이성윤 위원도 지적했고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경찰에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실어 준 것은, 해방 후 우리나라에 역사적 아픔이 있는 것은 아시지요? 경찰 권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경찰에게 많은 힘을 실어 줘서 경찰을 통제하고, 그때 당시에도 ‘이것은 한시적이다’ 이런 국회 속기록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세월이 흘러서 문민정부가 탄생했고 그러면서 경찰이 지금 최고 권력기관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지금 경찰 출신 대통령도 배출이 되는 정도까지 이르렀고 또 파면이라는 아픈 상처가 생겼는데 과연 지난 3년 동안 경찰이 정말 경찰 독립, 국가 그런 어떤 법체계만큼 독립적으로 권한 행사를 했느냐 이런 부분에서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계 관련해서도 검사에게는 파면이 없다는 것을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어쨌든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특혜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 경찰이 국민들에게 그런 많은 독립된 권한을 부여받았으면 그 직무 자체를 중립성을 지키면서 독립적으로 잘했느냐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자꾸 준사법기관, 준사법기관 그러시는데 사실은 법원하고 경찰은 다릅니다. 다르고, 이제는 경찰도 그런 생각에서 벗어날 때가 됐어요. 경찰은 엄연히 행정기관입니다. 자꾸 착각하지 마세요. 자꾸 법원하고 같이 어깨를 겨루면서 법원의 권위를 빌리려는 과거의 그 생각들은 이제 버릴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대해서도 지금 공소청하고 수사청 분리하려는 여론이 비등하다는 것을 차관님도 잘 아실 텐데 검사징계법 관련해서도 일반 행정공무원하고 이제는 똑같이 가야 될 때가 됐어요. 검사라고 특별히 이렇게 특별한 보장을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경찰이 독립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제 역할을 다해 왔다면 당연히 경찰 독립을 더 세게 보장해 줘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게 현실 아닙니까? 현실에 몸담고 있으니까 아니라고 아무리 강변하실 수 있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경찰권 행사를 남용하고 있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특히 또 정치적인 사건에서 정말 조국 전 대표라든지 이재명 민주당 후보라든지 또 많은 정치적인 사건들에 있어서 과연 경찰이 중립을 지켰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할 필요가 있고.

저는 아까 존경하는 이성윤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이제는 일반 행정공무원과 똑같이 행정 절차처럼 징계를 받고,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징계 청구권자와 심판하는 자가 당연히 분리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 경찰 내 이런 독립된 징계 절차를 두는 것도 굉장히 특혜인데 이제는 경찰권이 너무 비대해지고 통제해야 된다는 국민 여론도 많고 당연히 법무부장관이 문민 통제를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안이 지금 발의된 것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것을 지금 규문주의니 어쩌니 따지기 이전에 경찰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반성이 먼저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법무부장관의 징계 청구권 이런 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요구를 반영하는 겁니다. 저는 검찰이 자꾸 여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 다 폐지하고 일반 행정공무원처럼 똑같이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차관 김석우** 위원장님, 위원님 말씀 관련돼서 답변을 좀 추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말씀하십시오.

○**법무부차관 김석우** 검사에 대한 특혜라는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검사는 두 가지 특수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률 위반, 헌법 위반 등이 있으면 탄핵이 될 수도 있는 특수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 판사와 검사만 정계가 되면 실명 그대로 징계 사실이 관보에 게재가 됩니다. 그 정도로 막중한 책임이 주어지는 자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현재 상태에서 문제 있는 검사가 있다고 봤을 때 제대로 징계 요구가 행사되지 않는다는 부분은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법무부 감찰이, 원칙적으로는 2차적인 감찰기관이기는 합니다만 법무부 감찰이 대검 감찰을 통한 감찰, 징계권 행사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된 감찰 사건 등을 비롯해서는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감찰 결과를 토대로 대검에다가 검사 징계 청구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루트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문제되는 경우에는 2차 감찰이지만 법무부 감찰에서 감찰을 하고 검사가 진짜 문제 있다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는 법무부장관이 직접 징계 요구를 못 하기 때문에 총장을 통해서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징계 청구권이 행사되지 않는다면 그 루트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을 검토하는 것이 옳은 해결책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소위원장 박범계** 거기까지.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그러면 그 루트가 뭐예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법무부 감찰에서 감찰을 실시했고……

○**소위원장 박범계** 아니, 다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안 올라오는데 그러면 그 루트가 어디 있어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법무부 감찰……

○**소위원장 박범계** 루트가 없이 다 절벽인데 무슨 루트가 있어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아니, 법무부 감찰 결과를 통해서 진짜 문제 있다는 게 밝혀졌을 때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합리적으로 했습니까? 합리적이지 않은 케이스가 발생했으니까 지금 이러한 입법 대안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차관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검사의 징계와 관련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

정하게 조사받고 징계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아무런 흠결이 없어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검찰의 어떤……

○소위원장 박범계 내가 지금 물은 것 이상으로 답하지 마십시오.

아무런 흠결이 없습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저는 어떤 공정성이나 중립성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않다? 문제가 없다, 그래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차관하고 여기서 논쟁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박희승 위원 저 한 가지만 물어도 되겠습니까? 질문 좀……

○소위원장 박범계 먼저 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고 질의든 절차에 관한……

○유상범 위원 지금 위원장이나 민주당 위원께서 하시는 부분, 분명히 그 입장에서 보면 충분하게 징계를 해야 되는데 징계가 되지 않았다 하는 비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개개의 사안에 있어서 운영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형태로 가야만 하는 것이지 그것이 더 벗어나서, 지금까지 검찰과 법무부의 관계에서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최대한 제한하는 형태 즉 검찰의 정치적 중립, 독립을 보장하는 형태로 수십 년을 지켜 왔는데 지금 특정 사안을 가지고 거꾸로 돌아가서 법무부장관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징계 청구권까지 장관에게 부여함으로써 사실은 정치권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법무부장관이 검사들에게 영향력을 훨씬 강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지금 제도를 개악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초점을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엉뚱한…… 제도 전체를, 부작용을 또 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으로 가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회의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 곧 이 표결이 강행될 것으로 보여서 저희가 그 외에 오늘 상정된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게, 시간이 없을 듯해서 위원장께서 배려를 해 주신 덕분에 그 입장은 좀 밝히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예, 그러십시오.

○유상범 위원 지난 5월 1일 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후보의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습니다. 내부 결정 과정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급기야는 로그기록까지 공개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고등법원에는 재판을 지연하도록 지휘하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과거의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도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법관 재임용을 탈락시키는 형태로 진행을 했었지 이렇게 노골적으로 어떤 특정 재판 사안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는 예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과연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공직선거, 재판 중단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의 결정으로 공판절차를 정지시키고 이미 진행된 재판절차를 혼자 대통령이 되면 적용하도록 하는 소급효까지 하면서 지금 소위 방탄입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탄입법 이것만 있지는 않지요. 지금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거나 또는 당선 무효 요건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또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는 법안, 탄핵 추진,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 재판도 포함하자고 하는 내용까지 하는 헌법재판소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우여곡절 끝에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법률의 일반·추상성의 원칙을 지키고자 노력을 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성이 혼들리기도 했지만. 그러나 사법부 판단에 대한 이와 같은 노골적인 불복 선언으로 헌법 84조를 사실상 특정 후보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인설법을 하는 이런 예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까지 해 가지고 다충 구조의…… 국가안보를 위한 3축체계라고 하는데 제가 이 법안을 보니까 이재명 방탄을 위한 3층, 4층 입법체계를 만드는 국회가 지금 저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철저하게 입법권의 남용이라고 생각하고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자기들의 대선후보를 지키기 위한 온갖 권한의 남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헝가리에서도 베네수엘라에서도 또 아르헨티나에서도 권력자들이 힘을 잡고 헌법재판관을 늘리고 자기들을 지지하는 재판관을 놓으면서 사법부를 장악했습니다. 대법관을 늘리고 또 대법관을 탄핵해서 쫓아내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법관을 앉혔습니다. 그 나라의 미래가 어땠습니까? 결국은 세계 선진국에서 가장 가난한, 모든 사람이 몸을 파는 나라가 되고 모든 국민들이 탈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다소 불만이 있고 마음에 안 들더라도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 왔던, 과거 박정희·전두환 시절에도 버리지 않았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버려서야 되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로 권력의 행사를 자제하고 절제해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장동혁 위원 3분……

○소위원장 박범계 잠깐만 있어요.

박정희·전두환 시절에도 있지 않은 일이다. 있지 않은 일이 벌어졌지요. 박정희도 하지 못한 일, 전두환·노태우도 하지 못한 일을 여러분들이 대통령으로 모셨던 그분이 했지요.

○주진우 위원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유상범 위원 지금 그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소위원장 박범계 위원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지요. 까먹으셨습니까?

○장동혁 위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법을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박범계 이제 4개월, 5개월 채 안 됐는데 그것을 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유상범 위원 아니, 그것……

○장동혁 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 이것은 상관이 없으니까요.

○소위원장 박범계 그리고 지금 유상범 간사님이, 전체회의 간사님이 아직 상정도 되지 않은 법안에 대한 정치적 코멘트를 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유상범 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혁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3분만.....

○소위원장 박범계 가만히 좀 계셔 보세요.

다시 상기시켜 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진행될 심의 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장동혁 위원 그러니까 의사진행.....

○소위원장 박범계 잠깐만 있어 보세요.

유상범 간사님.

○유상범 위원 지금 표결을, 이것을.....

○장동혁 위원 그러니까 제 의사진행발언으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그래요?

○장동혁 위원 예.

○소위원장 박범계 장동혁 위원님.

○장동혁 위원 오늘 지금 상정한 법안들을 보면 앞부분에 거의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치적 쟁점이 가득한 법안들만 쭉 의사일정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검사징계법에 대해서도 저는 법리적인 말씀만 드렸고요 지금 특검법 3개에 대해서는 워낙 우리가 특검 법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만 법률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법안소위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의사진행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에 대해서 최종적인 해석 권한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추상적 법률 해석은 헌법재판소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 84조 소추의 의미에 대해서는 결국은 재판을 진행하면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대선 이전에 항소심 판결이 나지 않는다면, 대선 이후에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항소심이 재판을 진행한다면 이 84조에 어긋나서 그 재판이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든 항소심의 판결이 내려지고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당선된 이후에 재판을 진행한다면, 대법원에서 헌법 84조의 소추의 의미를 재판 진행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법원이 그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해서.

따라서 결국은 이 소추의 의미에 대해서 수사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수처에서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서 수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미 사실상은 결론이 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소추의 의미를 소추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재판까지 포함할 것인지는 저는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해석을 내리고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무리해서 법을 개정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고. 지금 이렇게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만 1항부터 쭉 올려놓고 이렇게 진행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 상황에 민주당이 계속 대선을 위한 이 정치적 법안들 그리고 대선 이후에 그런 정치적 상황을 감안한 법안들만 올리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어떤 법안이든 예전에 법사위에서는 서로 토론하고 이견이 있으면 한 번 더 숙고하거나 더 논의하는 과정들을 거쳤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냥 일방적으로 표결로 강행하

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한다면 사실 이렇게 토론하는 절차는 매우 무익할 것입니다. 저는 검사징계법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경청할 만하고 다른 제도적 보완이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표결로 진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법안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표결로 진행하신다면 저희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굳이 정치적인 논쟁을 할 필요도 없고, 저희들이 법리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귀담아듣지 않으시고 표결로 할 거라면 저희들은 오늘 이 법안소위에서 계속해서 표결에 참여하고 토론에 참여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박희승 위원님, 아까 한 말씀 하신다고 그랬지요?

○박희승 위원 예.

검사 징계 관련해서 이게 지금 사실은 징계를 당한 피소추인은 어차피 징계가 결정되면 확정되는 게 아니지요.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박희승 위원 그러니까요. 다시 또 법원에 가서 구제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박희승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검찰총장 외에 또 법무부장관을 추가해서 이렇게 징계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늘린다고 그래서 본인의, 검사 개인의 구제 절차가 다 막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지금 이 법안을 만드는 것 자체가 검사들의 직무의 독립성에 큰 지장이 옵니까? 어떻습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검사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제가 두 번째 논거로 말씀드렸고. 가장 큰 문제점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권한과 징계 의결하는 권한이 기본적으로 분리가 돼 있는 게 타당한데, 분리가 돼 있다는 걸 전제로 검사징계법이 성안이 돼 있고 그래서 법무부장관은 징계 의결을 담당하기 때문에 빠져 있는데 그 기본적인 체제는 유지를 하면서 징계 요구 권한을 준다면 일반적인 다른 행정 공무원하고도 전혀 균형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서 체계상 문제가 있다라는 걸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두 번째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사의 독립성이라는 측면은 또 두 번째 정쟁의 논거로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행정소송으로 다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법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하다는 말씀 충분히 맞는 말씀이신데 다만 거기에 앞서서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라고 하는 결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대원칙을 어느 정도는 준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박희승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서영교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실래요.

○서영교 위원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 84조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야기를 간단히 하려고 하고요.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좀 하려고 하는데……

소추를 받지 않는다, 대통령은 외환·내란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5년 임기를 보장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헌

법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을 국민이 뽑았고 그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일을 잘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재판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는 것도, 소추를 해야 재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판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어마어마한 일을 목도했어요.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대통령인데 내렸고 사법부 역사상 한 번도 없는 구속취소라고 하는 것을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있었고 그리고 법원행정처 차장님도 처장님도 얘기했지만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로 9일 만에 그런 판단을 내린 적은 법관으로 있은 이후로 한 번도 보신 적이 없다면서요? 그렇게 했고.

그런데 저희는 깜짝 놀라는 거지요.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이해가 가세요? 지금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후보예요. 89.77%로 후보가 됐어요. 내란을 겪으면서 후보가 됐어요. 그래서 대통령선거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선거 기간이 5월 12일인데 5월 12일부터 6월 3일까지 재판이 다섯 번이 잡혔어요. 이것을 대법원이 허락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나요? 어떻게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후보 관련해서 5월 12일부터 대통령선거가 시작인데 5월 13일, 5월 12일, 5월 20일, 5월 27일 그리고 투표 날인 6월 3일까지 재판을 잡아 놨어요. 이런데 이게 법원이 공정하다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에서 2심에서 무죄가 난 것을 9일 만에 파기환송을 시키고 이것을 또다시 15일 날 재판을 하겠대요. 이게 이해가 가는 일입니까, 여러분은? 이게 세계에 있는 일입니까? 이게 역사 속에 있는 일입니까? 법원은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이 헌법 84조는 대통령 임기를 내란죄·외환죄 말고는 보장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추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소추가 안 되니까 재판도 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건데 지금 법원이 하는 일을 보니까 이것 법으로 다시 개정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여야를 떠나서 그냥 보시자고요. 어떻게 5월 12일 날 선거가 시작되는데 재판이 다섯 번이에요. 재판 다섯 번이면 재판 준비해야지요, 오고 가고 해야지요, 그러면 대통령선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법원행정처 차장님, 이거 정치 중립 위반 아닙니까, 법원의? 대선에 개입 아닙니까? 대선에 개입하는 건 정치 중립 위반이잖아요. 정치 중립 위반은 법적 처벌이잖아요. 어떻게 법원이 이렇게 해요? 그거를 이야기해야지요. 그래서 개입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개입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 고등법원은, 형사7부는 기일을 변경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여야를 다 바꿔 놓고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저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국민의힘 위원들도, 공정한 대선은 치르게 해 줘야 되잖아요. 지든 이기든, 이거 우리가 이기자고 우리가 만든 대선도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대선판이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일찍 올 줄 몰랐어요. 그런데 공정하게 대선, 선거운동은 하게 해야 되고 국민에 선택권은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끼어들어서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려고 하는 의도가 삼척동자도 보이는데 가만히 있으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차관도 법원행정처 차장도 할 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 얘기하면서 이 검사징계법 관련해서는 저는 검사는 독립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정 정도 법무부장관에게 그걸 안 줬던 이유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검사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검사 탄핵안 낼 때도 ‘검찰총장이 징계를 좀 하셔라 아니면 감찰이라도 좀 하셔라’라고 감찰을 몇 번을 요구했는데 아예 감찰을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없는데 이번에 감찰관을 알 박기로 임명했잖아요. 이러니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들이 직무 유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사실은 법무부장관이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로 현재 법무부장관은 감찰관을 알 박기를 하지를 않나 그리고 그동안 감찰을 좀 하라고 할 때 검찰총장이 제대로 한 적이 없지를 않나 그러니 이번에는 법무부장관이 징계권이라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동안 정상으로 해 왔다면 저는 이런 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주 있을 수 없었던 비상계엄을 했을 때 검찰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스스로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안이 지금 필요하고 통과되어야지 서로 견제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박범계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되지 않은 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에 대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표결을 아마 강행하면 나가실 것 같아 가지고……

### ○유상범 위원 마무리하시지요. 저희는 나가겠습니다.

### ○소위원장 박범계 잠깐만, 그러면 이 말씀 듣고 가세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들었고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직 판사들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용은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재명 몇 년 전 발언이 윤석열보다 악랄하냐?’라는 현직 판사의 글입니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 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되었습니다’라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현직 판사입니다. 또 고려대 로스쿨의 이주원 교수님은 한국형사법학회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법률신문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다 같은 취지의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제가 장황하게, 오후에도 기자회견이 있습니다만 법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아직 상정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유상범 위원님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검사징계법은……

### ○유상범 위원 마무리했지요?

### ○소위원장 박범계 예.

나가실 겁니까?

### ○유상범 위원 더 있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일부 위원 퇴장)

### ○소위원장 박범계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나가셨으니까, 심의는 계속합니다.

위원님들, 지금 수석전문위원의 제안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무부장관이 징계 요청을 청구를 할 사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일이고요, 앞으로도 저

는 있다고 봅니다. 현재의 체제로는 그것은 난공불락입니다. 다만 규문주의에 대한 어떻고 저렇고 이런 등등 공정성에 대한 어떻고 저렇고 그런 말씀들을 법무부차관이 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장관이 정계 요청 심의를 요구하는 경우에 법무부장관은 그 심의에서 빠지는 그 정도는 어떻겠습니까?

이성윤 위원님, 그렇게 되면 법무부차관이 아마 위원장이 돼서 진행을 하겠지요?

○이성윤 위원 예, 원래 그렇게 돼 있……

법무부장관은, 지금 현재 안은 검찰총장만 청구로 돼 있잖아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현재……

○이성윤 위원 장관도 이번에 청구권자 넣는 거잖아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이성윤 위원 문제없는 것 아니에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현재 법 17조 2항도 정계를 청구한 사람은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러니까요. 특권 없습니다.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런데 그때 항소심 판결은 위원장을 지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だ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법안 자체는 위원장을 지정하도록 돼 있고 항소심 판결문은 정부조직법상으로 위원장이 직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에는 차관이 하는 게 맞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지정하는 게 문제였다라는 판결문의 그 내용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박희승 위원 법원행정처 차장님, 법원은 정계위원회 구성할 때 위원장을 누가 지정합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것으로……

○소위원장 박범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정계요청권은 있는데 아마 그걸 전제로 해서 정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빠지는 걸로 이미 기존 검사징계법이 있네요. 그래서……

○이성윤 위원 기존 법에 있습니까?

○소위원장 박범계 예, 있어서 일반 검사들에 대한 정계 청구권 조항만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이견 없지요?

(「이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33)

(11시12분)

○소위원장 박범계 의사일정 제3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정환철 수석전문위원님, 3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의사일정 제3항 김용민 의원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날부터 법원의 결정으로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의무적으로 정지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체로 요지는 3쪽에 있는데요, 참고하시고요.

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쪽 검토보고 요지를 보고드리면,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날부터 퇴임일 까지 법원의 결정으로 공판절차를 의무적으로 정지하는 내용이고요. 이것은 헌법 제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취지를 형사소송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서 법 해석의 충돌을 방지하고 대통령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과 관련돼서 헌법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와 관련된 논의가 필요합니다. 불소추특권이 공소제기부터 판결 확정까지 전 과정을 포함한다고 볼 경우에는 헌법 제84조의 취지는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원활하게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고 또 공소제기만을 금지하고 재판 과정은 허용한다면 불소추특권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고 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으로 재직 중인 동안만 형사상 특권을 부여한다는 이 결정에서 재직 중이라는 표현에 중점을 두었을 때 불소추특권이 공소제기부터 판결 확정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불소추특권이 공소제기 단계만을 의미하며 공소가 제기된다면 재판 과정은 진행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헌법 제84조의 문언이 소추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소추는 또 공소제기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재판 과정은 사법부 권한으로 소추와는 별개의 절차라는 점에서 진행될 수 있다는 의견이고요.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또 재판 과정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을 고려할 때 불소추특권은 특권이기 때문에 공소제기 단계만을 의미한 것으로 좁게 보는 것이 논리적이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논의할 사항으로는 헌법 제84조를 보시면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판절차 정지 규정의 적용 시점에서 ‘재직 중’이라고 규정한 취지와 개정안이 ‘당선된 날부터’ 이렇게 하면 실제로 ‘재직 중’이라는 표현과 ‘당선된’ 것하고는 재직하고 다르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개시된 날부터’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또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외환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사소추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공판절차 진행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정안에서는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까지도 공판절차가 정지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관계 기관 의견 진술해 주십시오.

○법무부차관 김석우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법안의 문제점은 헌법 해석의 문제로 해결해야 될 영역에 있어서 입법 개정을 통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헌법이 규정하는 불소추특권이라고 하는 취지는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대통령의 특수한 직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권위를 확보하여 국가의 체면과 권위를 유지한다는 데 있습니다.

헌법 84조에 보면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여기서 유의 할 점은 재판 기능 정지와는 무관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사재판은 피고로서 대상이 됩니다. 행정재판·헌법재판 역시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84조의 취지는 재판 기능 행사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84조에서 형사에만 국한했는데 이 소추의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지난번 이른바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에서 현재는 수사권 및 소추권은 입법부·사법부가 아닌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부여된 헌법상 권한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다만 헌법상 권한이 검사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공통된 의견이 수사와 소추권은 행정부에 부여된 권한이다. 그렇다면 84조의 해석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재판 기능을 정지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행정부의 수반으로 있는, 자신이 수반으로 있는 행정부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부 영역에 대한 기능 행사를 정지시키는 것에 취지가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재판 기능을 정지한다고 해석을 한다고 하게 되면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것에 이런 식의 규정이 가능했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미국의 최근 사례가 참고할 만하다고 보여지는데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보다 더 강화된 면책특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퇴직 이후에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낙수 대통령의 재임 시절에 공군 종사자가 해임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츠제럴드라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한 대법원 판결이 상당히 유의미한데 그 사건에서 민사소송에서도 면책특권은 부여된다라고 대법원은 판결했습니다. 그 취지는 이른바 대통령이 재직 중에 의사결정 과정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경우에는 의사결정 자체에 부담을 느껴서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재직 중에 있었던 사안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은 다 면죄부를 줬습니다. 그게 1982년도 판결인데.

그다음에 두 번째 나온 판결이 클린턴이 아칸소 주지사 시절에 폴라 존스에 대한 성추행을 한 사건이 문제가 돼서 폴라 존스가 재직 중인 클린턴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대법원 판결은 1997년도에 선고됐는데 그때 클린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려면 시간과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되는데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전념하기 위해서 내가 재직 전에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도 면책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만 당시 미국 대법원은 그 부분은 면책특권에서 보장된 영역을 벗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대법원에서 유의미한 판결이라고 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번에 대선 직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행동과 관련된 면책특권 사건에서도 대법은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대통령 권한 중에 코어에 해당하는 핵심적인 권한은 절대 면책, 그런데 공적인 행위지만 코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추정을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가 중요한 건데 언오피셜(unofficial) 그러니까 사적인 행동, 공적 직무에 속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는 면책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때 나온 대목이 ‘프레지던트 이즈 낫 어보브 더 로(President is not above the law)’, 그러니까 대통령은 법 위에 있지 않

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대법원은 대통령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 직무수행 중에 의사결정이 왜곡되지 않도록 외부의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재직 전에 있었던 행동 내지 재직 중에 있었지만 사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캔디데이트(candidate), 그러니까 선거에 대한 예비후보자 시절 또는 정당의 대표자, 파트 리더일 경우에는 면책특권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예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불소추특권이 보장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직무수행을 충실히 하고 재직 중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형사상의 소추에 대한 위험부담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 재직 전의 대통령의 직무와 아무 관련이 없는 행동에 대해서까지 면죄부를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 부분이 입법정책적인 결정으로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 더욱 더 위험하다고 보는 것이, 만약에 헌법 해석의 문제로 끝날 것이 아니고 입법 개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나중에 다수당이 바뀌었을 때는 또다시 이 중단됐던 형사소송을 되살릴 수 있다. 그렇다면 일국의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통해 가지고 국민투표에 준하는 정도의 의사결정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국회의 어떤 다수당의 의결에 따라 가지고 정지가 됐다가 또 반대 입법이 허용된다면 또다시 되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보기 때문에 단순하게 입법정책적인 문제로 접근해서는 곤란하고 최소한 국민의 의사, 그래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국민투표에 준하는 정도의 결심은 받아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박범계 잠깐만요.

김석우 차관이 그 억양과 톤과 빠르기와 그렇게 확신에 찬 것이 오직 한길만을 향해서 하고 있다는 것은 한번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나는……

답하지 마세요.

그만한 경력이고 그만한 배움이면 그런 말이라 하더라도 상대가 듣기에 좌중이 듣기에 객관적이구나, 정말로 스스로를 닦고 닦아서 그 가슴속에서 우러나와서 입을 통해서 나오는 정말 고언이구나 하는 느낌 정도로 표현할 줄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그렇게 소리를 높여 가지고 빠른 속도로 김석우 차관이 하는 얘기는 잘못됐고 내란을 방조하는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 때 차관으로 발탁되더니만 지금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다, 나도 이렇게 소리를 높여서 빠르게 논리를 가미해서 얘기 못 해서 못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스스로를 한번…… 그 견해 존중하니까 내가 끝까지 다 들었어요.

하나 덧붙입니다. 그 말의 속도와 억양과 톤과 양을 놓고 볼 때 내가 전에도 지적했듯이 과연 이 사람이 대한민국 법무부의 차관인가? 자기를 정말로 수양하고 통찰하는 과정을 거쳐서 내뱉는 말인가? 그 말의 내용 의미와 별개의 문제로 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같은 얘기라도 좌중과 상대방과 국민들께 호소력 있게 설득력 있게 내공을 거쳐서 나오는 말은 다르지 않겠어요? 하루이틀 화를 내는 것도 그렇고 안타까워요. 법무부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예?

박성재 법무부장관도 엊그저께 복귀해서 법사위 나왔을 때 나하고 웃으면서 서로 완전히 다른 철학을 나눴지만 나름 나는 위원회의,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교양과 품격과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서로 선문답을 나눈 겁니다.

도대체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보고를 한다든지 또는 본회의장에 섰을 때의 그 발언 내용과 속도와 양과 톤과 어조와 지금 여기 언론도 없이 우리 내부에서 조용히 토론 심사하는 뭐가 달라요?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나도 소리치라고 하면 고함을 치라고 하면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천편일률입니까? 들어오지 않아요,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 창피해.

차장님, 의견 주세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현재 진행 중인 구체적 사건에 관한 재판사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에서는 여기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위원님들 토론해 주십시오.

○**박균택 위원** 차관님, 법무부 검토의견을 보니까 ‘자격이 없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이거 누가 쓴 표현입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법무부에서 작성했습니다.

○**박균택 위원** 법무부의 누가 쓴 겁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내부적으로 누가 작성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박균택 위원** 차관님이 쓴 거예요, 장관님이 한 말씀이에요, 아니면 형사법제과장이 쓴 겁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실무진이 작성했고 저도 내용을 다 봤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 문구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떤 자격요건이라는 것과 불소추특권은 구분해야 되는데 이 불소추특권 자체가 남용됐을 때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목한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균택 위원** 헌법 84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입법으로 취지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규정인데 그걸 가지고…… 이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있습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 부분은, 그 보고서의 그 문구는 이렇게 해석이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박균택 위원** 그런데 여기다 대고 ‘자격 없는 피고인’, ‘범죄의 도피처’ 이런 표현을 씁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 부분은 특정인을 지칭한 것은 절대 아니고……

○**박균택 위원**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충적인 입법으로 취지를 명백히 하자고 지금 입법을 하자는 것인데 국민이 뽑게 될 또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대해서 자격 없는 피고인이니 범죄의 도피처니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이 부분은 만약에 이 법안이.....

○박균택 위원 그러면 이 표현은 차관의 생각도 부합한다는 얘기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이 취지를 말씀드리면.....

○박균택 위원 장관님의 생각에도 부합하는 것이고 형사법제과에서도 이런 표현을 썼다 이 말이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이 취지대로라면 만약에 그런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조차도 이 제도를 약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입니다.

○박균택 위원 이런 사건이 수사 또는 재판 중인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거 맞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박균택 위원 대통령 선출을 검사·판사가 합니까, 국민이 합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국민이 하지요.

○박균택 위원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박균택 위원 그리고 헌법 84조에 ‘소추되지 않는다’는 표현이 나오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박균택 위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법에다 드러낸다고 이런 입법을 추진하는 건데 여기다가 범죄자니 무자격자니 이런 표현을 써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러한 방식으로 약용될 소지가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검사·판사가 선택하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가!

○법무부차관 김석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박균택 위원 국민주권주의를 인식하는 시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런 표현을 안 쓸 겁니다. 헌법의 취지를 생각해도 함부로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헌법 교과서 다 찾아봤습니까? 권영성, 정종섭, 이효원 그리고 김하열 등등 이 교수님들 실력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인정합니다.

○박균택 위원 그분들이 다 당연히 재판도 정지된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모릅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렇지 않은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렇지 않은 견해는 교과서, 내가 찾아본 저명한 학자들 10명의 교과서에서는 3명은 언급을 안 하고 7명은 다 그렇게 100%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명한 교수들 다, 또 누구십니까? 성낙인 교수님을 비롯해서 차관님을 가르쳤던, 차관님이 보고 배웠던 교과서에 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범죄자를 옹호하고 무자격자를 대통령으로 되게 만들고 유지하게 만드는 그런 취지로 그 교과서를 썼다고 생각합니까? 결국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차관님은.

○법무부차관 김석우 아닙니다.

○박균택 위원 이번에 대법원의 판결도 마찬가지고, 6월 3일 이전에 민주 진영 후보의

정치 생명을 끊어 놓겠다고 추진하는 대법원의 판결 그리고 그것을 수행하려고 하는 서울고법의 재판부도 그렇고 차관님도 그렇고 그분들 눈에는 국민들이 통치의 대상이지 대한민국의 주권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표현을 씁니까? 그러면 국민이 바보라서 범죄자를 옹호하려고 무자격자인 줄 알면서 뽑았다는 얘기입니까?

국민이 이것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서 이런 판단을 해서 선출해 놨는데 거기를 무자격자다, 범죄자다,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써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아니, 제가 그 대목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박균택 위원 됐습니다. 차관님의 인식을 한번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장관님, 차관님, 형사법제과 검사들이 지금 다 이렇게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대목입니다.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중대범죄에는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 흉악범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이 일반화가 됐을 때 남용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박균택 위원 그러면 권영성 교수, 성낙인 교수, 이효원 교수, 정종섭 교수, 김하열 교수, 한수웅 교수 이런 분들이 다 지금 이 범죄자를 옹호하고 무자격자를 옹호하는 그런 학설을 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차관님하고 장관님하고 형사법제과 검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확인하고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충분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아까 차관님 말씀 들었는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우선 그거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수백 번 압수수색 하는 게 맞아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 부분은 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는……

○서영교 위원 아니, 아니에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각 사용처마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영교 위원 사용처마다 확인하는 것도 문제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게 압수수색입니다.

○서영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쓴 내용이 뻔할 텐데 그게 어떻게 수백 번이 될 수가 있어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아니, 각 업소마다 하나씩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카운트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보세요. 업무추진비는 어떤 겁니까? 특활비는 어떤 거예요?

그러면 특활비는 영수증 내놔서 그 수많은 특활비 우리가 다 압수수색 해야지 되는 거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특활비는 기본적으로 그 사용처 자체……

○서영교 위원 국회에다 내야지요. 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은 특활비 자료 안 냈잖아요. 그러니까 다 압수수색 들어가야 되지요, 여러분.

○법무부차관 김석우 자료를 안 낸 것이 아니고 행정소송에서 정해진 정도 그 정도 내

에서 특활비나 특정업무경비는 제출했습니다.

○서영교 위원 보세요. 냈는데 거기 몇 개가 남아 있는 건데 여러분 다 압수수색 들어가야 되잖아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특활비는 영수증으로만……

○서영교 위원 업무추진비, 여러분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것 제대로……

○법무부차관 김석우 특활비는……

○서영교 위원 잠깐, 들어 보세요.

제대로 자료 냈어요, 안 냈어요? 똑같이 다……

업무추진비도 제대로 자료 냈어요? 업무추진비 다 내야 되잖아요. 냈어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판결에 따른 범위 내에서는 제출했습니다.

○서영교 위원 아니지요. 어디에다 판결에 따른 제출을 해요? 어디다 판결을 해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아니, 행정소송에서……

○서영교 위원 국회에다 제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국회에도 그 범위 내에서……

○서영교 위원 판결이 어디다가 판결해 준 거예요, 그 판결이? 시민단체에 판결해 준 거지……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국회에다가 그런 판결 한 거예요?

국회에는 자료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제출해야 됩니다.

○서영교 위원 해야 되지요? 그런데 무슨 행정소송 얘기가 있어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아니, 기본적으로 행정소송의 취지에 맞는 범위 내에서 제출했다는 얘기입니다.

○서영교 위원 자, 보세요. 시민단체가 내는 것은 그렇게 되고 국회에서 요구했는데 국회에 제대로 냈어요, 안 냈어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시민단체에서 한 그 정도 냈습니다.

○서영교 위원 법무부차관, 윤석열 비상계엄 맞아요, 안 맞아요? 틀렸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 부분은 재판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라……

○서영교 위원 아, 그러면 윤석열 비상계엄이 재판 진행 중이라 말을 못 해요, 그게 잘못됐다고?

○법무부차관 김석우 아니,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법무·검찰의 한 구성원으로서 책임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서영교 위원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지요. 올바른 발언을 해야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게 내란인지는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내가 윤석열 비상계엄이 잘못됐냐고 물었어요, 내란이냐고 물었어요? 내가 윤석열 비상계엄이 잘못됐냐고 물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말 못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수사 중이라고.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 부분이 잘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저도.....

○서영교 위원 법무부차관으로서 이야기하세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그것이 내란죄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서영교 위원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가 어디 있어요, 지금!

국회에 헬기가 오고 군인들이 총을 들고 오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하고, 재판에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을 못 하면 윤석열 내란에 동조하는 거지요. 윤석열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거지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비상계엄에서 내란행위를 판단했어요, 안 했어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안 했습니다.

○서영교 위원 내란행위 판단했잖아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헌법재판소에서는 내란죄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서영교 위원 내란죄가 아니라 내란행위에 대해서 판단했잖아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내란행위 자체가,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가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헌법 위반이냐를 판단했지 내란행위가 형법상 죄가 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영교 위원 법무부차관, 좀 가만히 있어 봐요.

그 다섯 가지 행위에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들의 정치행위를 못하게 한.....

○법무부차관 김석우 다 위헌이라고 봤지요.

○서영교 위원 위헌.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거 위헌.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내란이라고 하는 행위는 어떤 거예요? 국가기관의 활동을 정치시키려고 폭동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것, 그래서 여기에 비행기를 내리고 총을 갖고 오게 한 것이 그 준하는 행위이다라고 판단한 거 아니에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 부분은 현재 결정문에는 내란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고 내란행위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습니다.

○서영교 위원 내란죄가 아니라, 내란죄는 빼고 내란행위라고 했잖아요. 그 행위가 내란행위 아니에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에 대해서 판단한 부분입니다.

○서영교 위원 그게 내란..... 아니, 얘기했잖아요. 비상계엄의 위헌성 그리고 국회에 들어왔고 국회기관의 업무를 중지시키려고 하고 선관위에 가지고 선관위의 업무를 중지시키려고 하고.

내란죄가 뭐예요, 내란죄가? 내란행위는 뭐예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사안이지요.

○서영교 위원 국헌문란이 뭐예요?

○소위원장 박범계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제가 오늘 법무부차관이 저라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징계가 되

지 않고……

○**소위원장 박범계** 서영교 위원님, 저 좀 바라봐 주십시오.

○**서영교 위원** 예.

○**소위원장 박범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이 건에 한해서 발언을 좀 마쳐주시지요.

○**서영교 위원** 법무부차관은 꼭 그에 응당하는 처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법무부차관의 저 발언들은 아주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이 내란행위 관련해서 벌써 다 헌법재판소도 판단하고 온 국민이 봤는데 그것을 답을 못 한다고 하면서 이것을 방어하고 있는 작태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법원에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소추권이 중단된다라고 하는 것은 왜 중단된다고 한 거지요? 대통령의 임기가, 대통령이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보장하자고 하는 거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보장되어야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영교 위원** 그리고 대선 기간은, 대통령선거 기간은 보장되어야 되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서영교 위원** 차장님, 대통령선거 중에 그 당사자를 대상으로 재판한 적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제가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서영교 위원** 없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서영교 위원** 그리고 대통령선거 중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서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몇 번이 예정되어 있지요? 아까 말씀드렸지요. 몇 번입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지금 현재 공판기일이 잡혀 있는 것은 4건으로 보여지고요. 그중에 3건은 후보자로 선출되기 전에 종전의 재판 진행 과정에서 기일을 잡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전부 다 대선이 있으니까 기일 변경되어야 되겠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사실 기일 변경은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당사자가 기일 변경 신청서를 내면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기일 변경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대통령선거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온 전국을 다녀야 돼요. 그거 기일 변경하는 사안이에요, 아니에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그거는 재판 관련된 사항이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제반 사정을 고려해서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기일 변경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잖아요, 이거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요. 대통령선거 해야 되는데 기일 변경 안 하면 그거 대선에 개입하는 거 아니에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

○**서영교 위원** 답변하셔야지요.

저는 윤석열이 이 상황이어도, 다른 사람이 이 상황이어도 이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제가 법원에 다 여쭤보니까 당연히 기일 변경 사안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전에 된 것이 2개가 있고 그 이후에 된 게 3개고 그 이후에 된 게 2개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은 독립적이지 못하지요? 독립적으로 판단해야지요. 이재명 대표가 돈을 먹었어요? 그리고 2심에서 무죄라고 했는데 그거를 누가 유죄라고 다 이야기, 단언합니까?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재판을, 우리는 법의 지배를 받지 법관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법관에게 권한을 준 것은 법을 공정하게 잘하라고 이렇게 해서 준 거지 법관이 뭐든지 함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법관이 된 게 아니에요.

법무부차관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법무부차관은 올바르게 법을 잘 집행하고 잘못된 건 살아 있는 권력이라도 정리하라고 준 자리이지 그 살아 있는 권력을 비호하라고 준 자리가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돈을 먹었어요? 돈 먹은 게 나왔어요? 말 가지고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오늘 이야기하지만 나도 재판받은 사람이에요. 1심·2심·3심 다 허위사실유포로 잘못 기소돼서 무죄 쳤어요. 그런데 2심에서 재판하고 3심 갈 때 6개월 후에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로 다 뽑은 사람을 그래요? 나는 그때 당선된 사람이에요. 여기는 당선되지도 않은 경우 아니었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답변 들으면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정당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또다시 이상한 일을 벌일 가능성도 지금 하는 거 보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소추라고 하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면 내란과 외환의 죄를 빼고는 소추당하지 않는다, 내란과 외환의 죄를 빼고는 재판도 해서는 안 된다. 소추를 해야 재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전에 재판 중이었던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소추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일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 법을 개정해서 확실하게 정지시켜야 된다 이렇게 의견 내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서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헌법 84조에 불소추특권에 관한 규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교과서에서 다 배우고 시험 쳐서 오늘 이 자리 법조인의 자리에 와서, 저희들은 의원입니다만 두 분은 법조인이고 저 뒤에 계신 분들도 다 같은 코스를 밟은 사람들입니다.

헌법에 여러 조항들이 있는데 거기는 제도적 보장이라는 조항들이 있고 또 기본권 조항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차장님?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소위원장 박범계** 기본권에도 소위 자유권적인 기본권이 있고 참정권적인 기본권이 있고 수익권적인 기본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익권적인 기본권 조항이 없는데 하위 법률로 어떤 수익적 행위를 하도록 하는 그런 것은 안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지요. 기억나시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소위원장 박범계** 그러나 그 외의 조항과 관련해서 헌법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데, 수익적 규정조차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기본권을 확대 해석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대법원이, 우리 법원이 해 왔습니다. 맞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소위원장 박범계 답을 크게 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소위원장 박범계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불소추특권에 관한 헌법 84조는 소추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소추의 의미에 대해서 많은 논쟁들이 있고 현재 학계, 우리 박균택 위원님이 일일이 호명했듯이 현재 헌법 학계의 다수 헌법학자들이 그것은 대통령의 일종의 국정 운영과 관련된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 헌법에서 대통령에 관한 여러 조항들을 두고 있고 헌법 선서에 대통령에게 책무도 주어지는 그런 측면까지 고려해서 여기에는 재판까지도 포함된다라고 해석하는 그것이 통설이다, 제가 이런 말로 지금 여쭙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해석이 있다는 것은 차장님 아시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소위원장 박범계 명시적으로 반하지 않는 그리고 수익적 규정도 아닌 어찌 보면 일종의 불소추특권, ‘권’입니다. 그것이 기본권일 수도 있고 대통령으로서 그 지위에 걸맞게 누려야 되는 권한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규정에서 반대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그러면 논란의 여지가 없겠지만—저는 법률로써, 입법으로써 그 의미를 해석하고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은 헌법학자들의 이론에 저는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차관, 내가 하나만 물을게요.

언필칭 통상의 의미의 ‘저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니까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돼’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국민이 갖고 있지 못하다고 보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습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아닙니다.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예, 아니고요.

두 번째, 저 사람은 죄를 지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렇지요? 우리가 배운, 차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배운 ‘인 두비오 프로 레오(in dubio pro reo)’라는 그런 법언이 있지요.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아서. 그러면 저 사람은 의심스러운데 대통령직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법 정신이 있습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소위원장 박범계 잠깐만, 다만…… 그냥 여기서 서로 말싸움할 것은 필요 없고요.

특정한 인물을 전제하지 않는다고 그랬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오늘 들은 말 중에 내가 제일 귀담아들을 말이에요.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특정한 인물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향후에 대통령이 될 사람들이 소위 그대 귀관들이 했던 검찰권에 의해서 수사 대상이 되고 그래서 기소가 됐는데 법원이 어찌 됐든 봐주려고 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1심과 2심과 3심의

재판이 있었고 과기환송을 했고 환송심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데 향후에 대한민국 헌정사에 역사적인 대통령들이 이 규정을 뒀다 그래서 법무부가 ‘그것은 범인의 도피처, 범죄의 도피처를 만들어 주는 꼴입니다’라는 설파가, 그것이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봅니까? 그렇다, 안 그렇다.

○법무부차관 김석우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소위원장 박범계 됐습니다. 아까 설명 다 했으니까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런 취지였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위원님들……

○박균택 위원 제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 현직 법관이 게시판에 글을 올렸던데 두 선수가 레이스를, 경주를 벌이고 있는데 심판이 어느 한 선수를 중간에 멈춰 서게 하는 것이 타당하냐, 레이스가 끝날 때 까지 기다리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한 선수는 뛰게 놔두고 한 선수는 못 뛰게 불잡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이런 글을 올렸던데 비유를 참 잘했더군요.

이게 지금 대선에서부터 선거 기간 중인데 법원이 특정 후보에 대해서 다섯 번의 기일을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편파적인 경기가 진행되는 이 상황, 누군가의 인위적인 노력으로 그게 방해받는 상황을 막는 차원에서 이 원안에다가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그 앞에 이 문장을 넣기를 원합니다. ‘피고인이 대통령후보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 시부터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그리고 ‘당선됐을 때는 재직 기간 중 공판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결정으로’라는 말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당연히 법으로 그 규정이 돼야 할 부분이지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좌우돼서는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정으로’라는 그 네 자는 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임의로, 법원·검찰에 의해서 임의로 대통령 자격을 박탈하는 이런 상황이 헌법 84조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입법을 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생각한다면 공소기각, 면소,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명백한 사안의 경우 이때까지 정지 할 필요는 없어서 이때는 예외로 한다라는 단서 규정을 두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공고기각, 면소, 무죄판결을……

○박균택 위원 선고하는 것이 명백한 사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위원님들……

이성윤 위원님.

○이성윤 위원 저는 법무부 의견을 보고 참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과거 윤석열이 총장 시절에 징계를 받아 가지고 징계 취소소송을 냈어요. 냈는데 그때는 원고가 한동훈 윤석열, 피고가 추미애였습니다. 그 후 대통령이 되자 원고가 윤석열, 피고가 한동훈으로 바뀌었지요. 그걸 국민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건 침대 소송이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그때 이 법안 취지대로 한다면 윤석열이 대통령됨으로써 재판은 중단돼야 맞아요.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한동훈을 법무부장관으로 지명해서 원고와 피고를 사실상 한몸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2심 결과 나온 거예요. 오늘 차관님 2심 결과 자꾸 인용하는 것 좋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윤석열 징계 이것 때문에 안 받은 거예요. 윤석열 1심 법원은 뭐라 그랬냐면 절차도 적법했고 또 면직도 선고가 가능한 중대 비위라고 판단했어요. 이런 윤석열에 대해서, 판결에 대해서 상고도 안 한 법무부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나는 자격도 없다고 보고요.

이렇게 감정적인 그런 의견을 내는 법무부 처음 봤습니다. 이건 두고두고 회자될 것입니다. 이것 쓴 사람, 차관님이 안 쓰셨다 그러니까 찾아서 뭐라고 하세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뭐 범죄의 도피처요? 국민들을 정말 뭘로 아는 겁니다. 국민들은 그 사람이 어떤 행동 했는지 다 압니다. 그리고 다 판단해요. 그렇게 정당한 사람이 대통령직을, 세상에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가 된다고요? 정말 이것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이런 말 쓴 거, 정말로.

그리고 형사소송법 246조에 뭐라고 했습니까?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소추라고 돼 있어요. 소추를 가지고 여기다가 법안을, 헌법에 구체화된 법으로 이 형사소송법을 만든다는데 뭐가 위법·위헌이라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박근택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의 법원의 기일 지정 그다음에 조희대 사법 쿠데타를 보면서 후보 등록 시부터 재판 절차가 정지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동의하고요. 다만 여기서 결정보다는 공판 절차를 당연히 정지한다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외 조항으로 헌법 84조 내란·외환의 경우에는 재판 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것으로, 정지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아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데 법무부 차관께서 본 법안이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라는 것에 박근택 위원님, 이성윤 위원님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제가 또 확인했듯이 그것은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는 답까지 했었습니다. 그 말씀은 국민의힘이나 일부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위인설법이 아니라는 것으로 저는 확인을 합니다.

차장님, 우리 법제에서 혹시, 별로 주목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공소시효의 정지요?

**○소위원장 박범계** 예. 정지와 중단을 형사소송 절차에서 의미 있게 구분합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좀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

**○소위원장 박범계** 뒤에 도움 주실 수 있으세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박범계** 예.

성함이?

**○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 이지영**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이지영 판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중단과 정지가 구별되어 있지만……

**○소위원장 박범계** 되지요.

**○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 이지영** 형사소송에는 정지만 있고 중단 사유는 따로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그러면 민사소송에서 정지와 중단은 개념적으로 어떻게 구분합니까?

○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 이지영 중단은 아예 소송 절차가 중단이 되어서 특정한 행위를 해야지 소송 절차가 다시 속개되는데, 예를 들어 당사자가 사망하였다거나 그러면 상속인이 그 소송 절차를 수계하는 행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계할 때까지 중단이 되고요. 법인이 합병으로 법인격을 상실하였다거나 그런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그러네요.

○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 이지영 파산하거나 그래서 소송행위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런 경우인데요.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중단은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고 정지만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방금 질의를 하셔서 제가 정확하게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민사소송과는 달리 국가가 소추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하면 그 자체로 형별권이 소멸해서 공소기각이나 사면했을 경우에 면소 이런 식으로 돼 있지 형별권이 누구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중단은 따로 규정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그러면 형사소송에서 쓰는 용어로 정지, 어떤 재판 절차가 중단돼야 된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지라는 개념은 법적인 개념으로 금방 느낀다는 말이에요, 일반인이. 그런데 중단은 쉽다는 말이에요. 선로의 개설을 중단한다, 있잖아요. 통로를 중단시킨다, 진행을 중단시킨다, 일반인도 쓰는 개념이라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정지, 형사소송에서의 정지를 쓰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그 중단적 의미가 다 포섭되는 그런 법적인 용어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 이지영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이지영 심의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혹시 법무부에서……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소위원장 박범계 차관 말고 동등하게, 뒤에 누가 나오셨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코멘트하실 분 있어요? 없습니까? 제가 지금 질문드린 것처럼 정지와 중단을 형사소송에서 구분해서 쓰고 싶은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의견이 계신 분 있습니까? 없군요.

○이성윤 위원 형사소송법에 혹시 중단과 정지를 같이 쓰고 있지 않나요? 규정 한번 찾아보시면 있을 것 같은데요. 없어요?

○소위원장 박범계 없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일옹.

그다음에 지금 재판 절차의 정지 규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종의 국정의 안정이랄까 또는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에 따른 주어지는 여러 가지 책무랄까 그런 것의 연속성 그러나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듯이 내란과 외환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재판을 통해서 그에 대해서 심판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박균택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렇게 국정 안정을,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그런 꾀하는 의미로 재판을 정지시킨다는 그 정신 안에 외관상 명백하게, 분명하게 공소기각할 사안이라든지 면소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든지 또는 관련 사건의 확정을 통해서 무죄임이 명백히 드러나는 그런 사건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재판을 통해서 면소, 공소기각,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제안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사실은 이 개정안 자체에 대해서 지금 관련 사건이 재판 사항으로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이 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해당 재판부에 대한 부담으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내는 것은 좀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그게 마지막 의견이시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소위원장 박범계** 법무부차관 짧게 얘기하세요. 소리 좀 줄여서 얘기해 보세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무죄 등이 선고될 경우를 예외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뒤집어 놓고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유죄를 암시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예외를 두는 게 구체적 타당성에서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대 해석이 가능한 영역이 있다고 보게 되면 논란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정지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상존한다고 보이고, 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외를 두는 것도 타당한 면이 있다고 볼지 몰라도 그 타당한 면 때문에 반대 해석상으로 또 오해될 소지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그것은 세간의 세평이겠지요, 그렇지요?

정리를 하면요. 일단 수석전문위원님, 조문을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이용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이 우리 위원회에 부의되지 않았지요?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예.

○**소위원장 박범계** 그래서 그 취지인데, 논거는 이런 겁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관한 규정도 있고 또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사법부의 재판권도 있고요, 또 대통령의 책무도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대통령이 되기 전에 22일간 보장되어 있는 선거운동의 자유가 있고요. 또 그 선거운동에 있어서 당연히 정파와 관계없이 후보자들에게 고르게 기회 균등을 부여해야 된다는 헌법 조항도 있습니다. 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직업공무원 제도에 관한 헌법상 규정도 있고요. 또 공직선거법으로 내려오면 여러 가지 관련 조항들, 참정권의 보장이라든지 또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에 대한 처벌 조항이라든지 그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헌법적 가치와 헌법적 가치를 이어받은 법률의 규정을 해석해 보면 적어도 지금까지 확정이 되지 않은 것은 맞지 않습니까, 지금 현안 재판과 관련해서? 맞지요?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예.

○**소위원장 박범계** 그래서 기일 변경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 실무적으로 거론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적어도 대통령 등록 시부터 선거 종료 시까지를 구분하고 또 당선이 되면 대통령이 되니까 당선 시 재직 기간 중으로 구분해서, 아까 정지와 중단이라는 개념이 의미가 없다고 하니까 통일적으로 그냥 등록 시부터 대통령 당선에 따른 재직 기간 중까지를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것으로 통일적으로 규정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김용민 의원안에는 결정으로 돼 있지만 그것은 당연히 정지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한번 읽어 볼까요?

○**소위원장 박범계** 그다음에 다만 예외적으로 내란·외환의 죄는 예외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박근택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공소기각, 면소, 무죄판결을 선고함이 명백한 사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해서 문구를 한번 다듬어 보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일단 정리가 조금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정리된 걸 박근택 의원안까지 포함해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피고인이 대통령후보로 등록한 때에는 법원은 피고인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후보로 등록한 때부터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로부터 대통령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기각, 면소, 무죄판결을 선고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일단 이렇게……

○**소위원장 박범계** 이렇게 수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특별한 이견 없으시지요?

○**이성윤 위원** 내란·외환 앞에다 헌법 84조를 넣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어떻게?

○**이성윤 위원** 내란·외환 앞에 헌법 84조를……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예, 수정, 넣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4.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정춘생 의원·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94)

(12시05분)

○**소위원장 박범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6페이지입니다. 오른쪽입니다.

제정안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및 이와 관련된 은폐·무마·회유·사건조작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특별검사의 임명, 결격사유 및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 표의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를 보시면 특별검사후보자는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가 각 1인씩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이 중 1인을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아니

할 경우에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 간주됩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특별검사 등의 권한 및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가 후보자 8인에 대해 임명 요청을 하고 대통령이 4인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만약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 연장자가 임명 간주됩니다.

특별수사관은 40인 이내에서 특별검사가 임명하고 특별검사는 파견검사 20인 이내, 파견공무원 40인 이내에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견공무원은 10분의 1 이상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파견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수사기간 및 재판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표를 보시면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원칙 90일, 연장 30일, 재연장 30일입니다. 재판기간은 1심 6개월 이내, 2심 3개월 이내, 3심 3개월 이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11조는 사건의 처리보고, 안 제12조는 사건의 대국민보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는 특별검사의 보수·퇴직·해임·신분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내용을 보시면 특별검사가 사망하거나 사퇴한 경우 대통령은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제3조에 따라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 새로운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하고 해임의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새로운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3조 그리고 부칙은 재판관할, 이의신청, 별칙 및 부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법원행정처 차장님, 지금 이 법안 심사와 별개의 문제인데요. 지금 서울고등 형사7부가 사건 검색창에 재판기일 변경을 6월 18일 날 한 걸로 사이트에 나오는데 확인을 한번 해 봐 주시겠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그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지금 즉시오.

말씀 다 하셨지요?

○**전문위원 김성완** 예.

○**소위원장 박범계** 그렇게 뒤에 실무관께서 확인해 봐 주시고.

법무부차관 의견 주십시오.

○**법무부차관 김석우** 법무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항과 6항과도 공통된 부분이라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대목은 기본적으로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3개의 특검법이 다 통과가 된다고 하게 되면 이제 총 인원 515명이 가동됩니다. 그중에 300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투입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말씀을 드린 취지는 기존의 검찰 기능 자체가 상당 부분 혁신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 부분은 그동안 계속 논의됐던 임명 방식의 문제점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특검의 임명 방식을 말씀드리면, 여섯 번을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을 했고 4건을 대법원장이 추천했습니다. 그다음 4건을 국회에서 추천했는데 2012년도의 내곡동 사저 특검과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 특검 같은 경우에는 당시 여당은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물론 내곡동 사저 특검에서는 나중에 논란이 있기는 있었지만 어쨌든지 간에 여야 간에 합의는 된 상태에서 여야는 빠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안과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최근에 된 게 드루킹 특검 같은 경우에는 당시 여당이 빠졌는데 그때도 여야 간에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드루킹 특검이나 최근 있었던 이예람 중사 특검에서 공통적인 것은 국회가 직접 추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2단계 추천, 그러니까 대한변협이 추천한 사람들 중에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루어진 2개 특검에서 2단계 추천 방식을 택한 점에 비추어 봤을 때 과연 국회에서 직접적으로 대상자를 추천하는 것 자체가 특검의 공정성 논란을 좀 부추기는 것이 아닌 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공소시효 정지라는 부분이 계속 이 3개 법안에 공통적으로 있는 부분인데,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이런 특혜 조항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차장님.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법원행정처에서는 특검 관련 사안에 대해서 종전에 말씀을 여러 번 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정책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아까 확인해 달라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지금 코트넷에 전산 입력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고요. 저희가 기일 변경 신청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오전에 확인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추가적으로 좀 더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좋습니다.

이 법안은 이미 다뤘던 법안이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거부권 행사해서 다시 재의결돼서 통과가 되지 않은 법안이고요. 그 내용과 전후의 내용이 다른 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토론하실 내용이 없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희승 위원 저는 남원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관님께서 검사나 검찰 수사인력 때문에 부담이 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진작 특검법이 통과돼서 진행을 했더라면 이미 수사도 마무리됐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누차 말했지만 현충원에 채 상병 안장식까지 갖던 사람으로서 정말, 그날 비도 내리고 그랬는데 마음이 너무 착잡했고 그다음에 그 부모가 왔었고 또 할아버지가 비석을 붙잡고 우시는 모습도 봤는데……

아니, 국가가 사실은 이런 군복무를 위해서 의무병으로 간 사람에 대해서, 이러한 순직

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더 존중해 주고 정말 예우를 해 줄 생각을 해야지 특정 상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을 덮어 버리려는 시도를 한다면 누가 국가에 대해서 충성을 하시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채 상병의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그 직을 걸고 했는데 그런 사람을 또 수사해서 기소를 하고, 이것은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아까 인력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국가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누가 군대 가겠습니까? 정말 이런 일은 정확하게 수사를 해서 국가가 먼저 그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정말 채 상병 같은 분은 앞으로 국가가 이분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좀 이러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나는 사실 이런 것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는 데도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이런 특검을 처리했으면 왜 국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난하겠습니까? 정확히 절차를 밟아서 빨리 이러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서영교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는 한데 짧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2분 내로.

**○서영교 위원** 법원행정처 차장님, 형사7부 관련해서 고법 공보관이 풀했어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맞습니다. 저희도 방금 그 말씀 드리려고……

**○서영교 위원** 그런데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아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서영교 위원** 공보관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통령후보인 피고인에 대한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선거일 후로 변경한다’.

왜 이런 얘기를 못 하세요? 대선을 하기 위해서 기일 변경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무슨 영향을 미치고 말고가 있습니까? 법원행정처 차장님까지 올라오실 때는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영향을 미치고 말고를 떠나서 거기가 잘못하면 이것은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걸 왜 얘기를 못 하세요?

제가 법원에 전화도 했어요. 그런데 다 이 부분은 기일 변경은 맞다고…… 저도 기일 변경해 줬고요, 저 상임위 있다고 기일 변경해 주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아팠는데 기일 변경해 주더라고요. 정치인만이 아니잖아요. 사업하는 사람 사업한다고, 장사하는 사람 장사에 지장 있다고 해 줄 수 있는 만큼 해 주는 거잖아요. 이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걸 얘기를 못 하세요?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아니, 얘기를 하셔야지요. 마음은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야 법원이 바로 서잖아요.

어떻게 대법원장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대법원장은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실 기록을 안 읽어요? 안 읽고 어떻게 대법원에서 우리는 상고이유서만 보고 그리고 올라온 기록만 봅니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중요한 재판에서. 저는 아닌 건 아니라고 안에서 얘기하셔야 되고, 혼드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서로 논의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법무부차관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이재명 후보가 어디서 돈을 해 쳐먹었습니까? 사람을 죽였습니까? 말 한마디 갖고 긴지 아닌지 이야기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사진 친 날 골프 쳤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사진 친 날 골프 쳤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것 제가 우리 모두 다에게,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사진……

○소위원장 박범계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골프 이 사진……

○소위원장 박범계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예.

○소위원장 박범계 미안합니다.

○서영교 위원 이런 정도는 다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 하지 않고 재판을 했어요, 파기환송을. 이것 범죄입니다, 범죄.

○소위원장 박범계 마쳐 주시고요.

○서영교 위원 예. 이 부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5.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 의원·정춘생 의원·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9)

(12시17분)

○소위원장 박범계 의사일정 5항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역시 종전 법안과 거의 같은 법안이니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관계 기관 의견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6페이지입니다.

오른쪽입니다.

제정안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범죄 혐의 사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특별검사의 임명, 결격사유 및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특별검사후보자 추천은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가 각 1인씩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후보자 중의 1인을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특별검사 등의 권한 및 의무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가 후보자 8인을 임명 요청하고 대통령이 4인을 임명하게 됩니다. 특별수사관은 특별검사가 80인 이내에서 임명을 하고 파견검사 40인 이내, 파견공무원 80인 이내의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 제6조제4항은 특별검사가 직무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열람, 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수사기간 및 재판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원칙 90일, 연장 30일, 재연장 30일이고 재판기간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이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사건에 대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하도록 하며, 심리의 전부를 속기·녹음·영상녹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는 특별검사의 보수·퇴직·해임·신분보장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3조 그리고 부칙에서는 재판관할, 이의신청, 별칙 및 부칙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를 보시면 안 제20조에서는 상설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가 이 법의 범죄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에게 그 사건과 인력을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기관 의견 주십시오.

○법무부차관 김석우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특검 법안이 다른 법안과 차이가 나는 것은 현재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수사도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태로 보이는데 이 특별검사제도 도입 취지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안건과 비교해 보더라도 현저히 낮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소를 인수한다는 것 자체는 기존의 권리분립 원칙 하에서 이미 이루어졌던 검찰권 행사 자체를 기존의 권리 기구가 아닌 제3의 기구를 통해서 인수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논란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현재는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열람을 할 수 있는 부분을 5분의 3으로 한 것 자체도 과연 국가안

보, 군사상 기밀 등을 고려해 봤을 때 타당한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행정처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종전 논의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번 특검법에서 보면 종전에서의 논의와는 다르게 세 가지 조항이 새롭게 추가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의견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10조 3항·4항·5항과 관련된 부분인데 본 사건이 국민적 관심이 많은 대상 사건의 심리 공개를 통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판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높이고자 하는 입법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0조 3항에서 심리의 예외 없이 공개를 하도록 한 의무적 공개 조항과 관련해서는 대상 사건의 특성상 국가적 기밀로 인해서 심리를 일부 비공개하고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 심리 공개로 인해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가 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형사소송법 147조에 의할 때 공무상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출석해서 증언을 할 때에는 소속 공무소의 승낙이 있어야지만 그 증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는 말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조 4항, 중계의 원칙적 허가 관련해서는 현행 법원조직법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등을 통해서 중계의 범위가 공판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로 제한이 되어 왔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확대를 위해서 2023년 9월 달에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자문위원회에서 중계 범위를 좀 더 넓힐자는 것이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었는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는 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조 5항에서 심리의 전부를 속기 및 녹음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새롭게 반영이 되었는데요. 형사소송법에서는 속기와 녹음을 선택적으로 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할 때 두 가지를 모두 병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좀 필요하고요. 모든 사항을 다 속기·녹음하도록 할 경우에 재판 절차 지연과 관련된 부분과 소송관계인의 사생활 비밀 등도 고려를 했었을 때 일정한 예외를 정할 필요는 없는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박균택 위원님.

○**박균택 위원** 차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는데 사실은 3·4·5항이 국민의 중대한 관심이 되는 사건이고 또 역사적으로 기록을 남겨야 할 필요성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특히 이 배경이 되는 게 지귀연 부장판사의 재판부에서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 과도한 특혜를 부여한다든가 김용현, 노상원 관련 재판에서 아직까지 계속 비공개 재판을 하다 보니까 그 비판론에서 이런 검토가 시작됐던 것 같은데, 다 반대하지 마시고 국민 또 외

부의 불신 이런 것을 전제하는 상태에서 조금 수정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안에서 반영한 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전제하에서 진행이 됐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 정도만 저희가 언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의 의무적 공개 관련해서도 예를 들어서 국정원 직원이나와서 증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국정원에서 허가를 해 줘야지만 증언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것이 무조건 공개돼야 된다면 국정원에서 허가를 안 해 주고 그다음에 증언을 할 수 없는 상황도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조금 의견 낼까요?

○**소위원장 박범계** 예,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이번에 헌법재판소는 어쨌든 다 녹화했잖아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서영교 위원** 녹화하고 그것을 순차적으로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나온 사람 중의 하나가 국정원장이었고 그리고 국정원 1차장인가요? 그렇게 나왔고 중요한 인물들이 다 나와서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혹시 재판 과정에서 중계하거나 녹화하거나 이런다면 국정원에서 허가를 안 해 줄까 봐 그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공개 관련해서는 지금 법정 증언과 관련해서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있고요. 그 규정에 따르면 공무상 비밀을 취득하고 있는 자가 법정 증언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소속 공무소의 승낙이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승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출석해서도 증언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이게 내란 관련한 법안이기 때문에 ‘내란죄 관련해서 국가의 기밀과 관련하지 않는다면 허락을 해야 한다’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그러니까 공무상 비밀을 취득한 자의 증언이 아니라고 본다면 이 규정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공무상 비밀을 취득한 자가 법정에 출석을 해서 증언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무상 취득한 비밀이기 때문에 그것을 취급하는 소속공무소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는 취지가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의 규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공무상 기밀이라고 하는 것과 국가안보와 관련한 것과는 어떻게 다르나요? 그러니까 공무상 기밀을 취득한자가 나올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이 내란죄와 관련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여기다 넣어야지 되는 건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그렇지는 않고요. 공무상 비밀이라는 건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공무를 취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이 공무상의 비밀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란과 관련된 것과 관계없이 그 비밀을 증언할 수 있느냐에 관해서 공무소의 허가를 받

아야 된다는 규정이 현재 형사소송법에 있다는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다 안 하셨습니까?

○서영교 위원 예, 됐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이성윤 위원님.

○이성윤 위원 이 법은 내란 특검법입니다. 여러 차례 발의가 됐지만 지금까지 거부권에 막혀서 안 되는 사이에 상당 부분이, 지금 내란 주요 종사자하고 우두머리는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석방에서 보듯이 많은 국민들이 과연 공소유지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또 지구연 재판부의 석방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 항고도 않는 등 제대로 공소유지를 할까 이렇게 의문이 많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특검법을 보고 느끼는 것은 두 가지 정도 됩니다.

첫째는 공소유지 사건을 특검이 해야 되는데 특검이 공소유지 사건을 이첩받아서 제대로 지휘해야 된다, 이걸 해야 되고요. 그러면 기존 검찰이 기소해서 공소유지한 사건은 특검의 관할로 해야 되고요, 이런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적용을 안 받는다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공소유지 중인 검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검사들에 대해서 사건만 이첩하고 만약에 특검이 그걸 이어받아서 공소유지를 하게 된다면 엄청난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파견검사 40명인가요, 또 특검보 4명? 이걸 가지고, 45명 인력으로는 공소유지가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유지 중인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소유지 지휘도 특검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이런 경우에 지휘받는 검사는 특검의 파견검사로 보지 않는다 이런 예외 규정을 두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지휘받는 검사는……

○이성윤 위원 특검에 파견된 검사로 보지 않고, 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특검의 지휘를 받게 하고요.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입법적 조치가. 상당 부분이 기소가 돼서……

○소위원장 박범계 기존의 공소유지 검사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 특검이 발동이 되면 검사 포함해서 파견이 되지요. 그러면 특검팀이잖아요.

○이성윤 위원 그렇지요.

○소위원장 박범계 특검팀이 되는데 이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말고 다른 검사들에 대한 지휘 그 말씀이신가요, 이 사안에 한해서?

○이성윤 위원 예, 지휘가 필요합니다. 이 특검법에 관련된 사건은 원칙적인 모형이 특검이 이첩받게 하고 법원 관할로 하고 특검이 지휘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검은 한편으로는 현재 하지 못한 수사를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공소유지를 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공소유지를 할 때는 기존의 검사들이 공소유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검사를 모두 특검 파견검사로 보면 깔끔하긴 한데, 이 40명에 다 포함된다고 그러면 나머지 파견검사가 나머지 수사되지 않은 부분을 수사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고요. 그렇다면 기존의 검사가 공소유지를 이왕 하고 있으니까 이 검사의 수사 지휘는 검찰총장의 지휘가 아니고 특검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다만 파견검사 수에는 넣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규정하면, 넣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우리가 특검법을 과거에 많이 시행을 해 봤는데 거기에 파견되는

검사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직제상 정규 TO에 들어가는 파견검사 외의 다른 검사들이 있습니까, 그 특검팀에?

○이성윤 위원 특검팀에는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성윤 위원 예.

○소위원장 박범계 제 말씀이 그건데, 그러면 장외에 있는 기존 검찰청의 검사들 그런 필요성이 어떤 부분에서 있을까요?

○이성윤 위원 이 사건은 특징이 특검법이 발효되기 전에 이미 상당 부분이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또 내란 사건, 윤석열 사건만 해도 증인이 50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국민들은 제대로 공소유지를 할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도 특검이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그래서 조항 됐잖아요?

○이성윤 위원 그래서 조항을 뒀는데, 지금 공소유지 중인 검사를 모두 특검에 파견받아서 공소유지를 한다면 깔끔하긴 한데 그러면 나머지 소수 인원의 검사들이 나머지 수사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 부분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전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공소유지 부분을 이첩·승계 받는 조항은 없지요? 수사를 이첩받는 그 조항은 있었는데.

○이성윤 위원 18조에 ‘공소유지를 위하여 이첩받은 사건’ 있습니다. 있는데 결국 이 법에 의하면 공소유지 중인 사건,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은 특검이 당연히 공소유지를 해야 되고 공소유지를 위해서 이미 기소된 사건을 이첩받은 사건, 이 사건도 법원이 재판권을 갖고 있는데 특검이 지휘한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전문위원 김성완 지금 6조 1항의 1호를 보시면 단서에 ‘다만, 공소유지의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재판이 진행 중인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도 포함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소유지 중인 경우도 이 법 시행 당시 재판이 진행 중일 때는 이것까지도 특검이 담당할 수 있도록은 돼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담당할 수 있는데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파견검사가 40명 아닙니까? 기소된 사건 말고, 공소유지 중인 사건 말고 특별히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전문위원 김성완 추가적으로 필요한……

○이성윤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공소유지 중인 검사들을 어떻게 보느냐? 특검에 파견된 검사로 보느냐, 아니면 기존 공소유지 중인 검사로 하되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게 하느냐. 그러면 나머지 룸이 좀 있어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소위원장 박범계 그러면 어디에 어떤 표현으로 넣어야 될까요? 필요한 것 같은데요.

○박균택 위원 특별검사 임명 전 공소유지를 진행하다가, 공소유지를 담당하다가 특검의 지휘를 받게 된 검사 수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성윤 위원 ‘40명에 포함되지 않는다’.

○박균택 위원 40명 조항에다가 그 단서를 넣는 방법이 어떨지.

○**소위원장 박범계** 그건 정원 조항과 관련된 거고, 지휘가 가능하도록 하는 문구는 어떻게 만드냐고.

○**이성윤 위원** ‘검찰청법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든가 ‘지휘를 받아’……

○**소위원장 박범계** 그러면 대상 검사의 표현을 어떻게, 모든 검사를 다 지휘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이성윤 위원** 이 법의 대상이 되는 검사, 이첩받은 사건, ‘특별검사가 이첩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에 관하여는 검찰청법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이 경우 지휘를 받는 공소유지 검사는 이 법에 의한 파견검사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박범계** 이해됐어요?

○**전문위원 김성완** 죄송합니다만 이성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법안이 지금 성안되지는 않았습니다만 7조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7조 1항을 보면, 이건 이성윤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라서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 7조 1항에서는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서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제2항에서 보면 2항에서는 이첩받은 사건과 관련해서 필요한 경우 이첩을 요구할 당시 공소를 수행한 검사 또는 군검사에게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아 계속 공소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고 하여, 말하자면 이 안에 따르면 전에 공소제기가 돼서 공소가 유지 중인 것은 그 검사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특별검사가 그 검사들을 따로 소송 지휘를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검사가 다시 파견검사나 이런 데서 파견을 받아서 별도로 할 수 있도록 이원화하자는 내용이신 것 같습니다.

○**법무부차관 김석우** 위원장님, 그 안에 대해서 혹시 발언 기회 주시면……

○**소위원장 박범계** 아니, 잠깐만요. 위원들 토론 시간입니다. 정해지면 말씀드릴게요.

저는 취지에 동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법안에 파견되는 검사 수 40명 TO의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 공소유지의 충실성을 기하기 위해서 특별검사의 수사 취지, 수사 목적, 수사의 방향이라는 관점에서 지휘할 필요가 있는, 그렇지 않아요? 공소유지는 따로 가고 특별검사 수사는 또 따로 가고, 하나는 산으로 가고 하나는 바다로 가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 TO에 안 들어가지만 이 사건을 담당하는 공소유지 검사들에 대한 지휘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것은 필요한 것 같아요.

○**박균택 위원** 공소유지에 대한 지휘는 당연히 필요한 것 아닙니까? 수사 따로 공판 따로라는 것이 말이 안 되고 본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미 기소돼 있는데.

○**소위원장 박범계** 그런데 그런 규정을 두지 않으면 제멋대로일 수도 있는 거지. 지금 그 외의 검사들까지 포함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성윤 위원** 아닙니다. 이 특검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이미 기소된 범죄가 사건에 상당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위원장 박범계**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외의 사건은 아니지요?

○**이성윤 위원** 예,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고요. 특검 대상이 되는 사건.

○**소위원장 박범계** 아니고. 지금 이론적으로는 공소제기해서 유지되는 사건이 검찰 입장에서 보면, 시각에서 보면 그게 한 9할 이상일 거고 그다음에 검찰 특수본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검찰 특수본 수사는 다 수사 인계가 되는 거잖아요, 이

법안 통과로, 확정으로?

○이성윤 위원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그러니까 결국 남는 것은 이 내란 사건과 관련된 공소유지 검사들에 대한 지휘만 남는 거잖아요. 맞지요?

○이성윤 위원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원래 이 의원님의 ‘특별검사는 사건 중 검사·군검사가 기소하여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하여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이건 들어가 있고 ‘따라야 된다’, 다음에 ‘특별검사는 1항에 따라 이첩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첩을 요구할 당시 공소를 수행한 검사·군검사에게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아 계속 공소를 수행할 수 있다’. 이 문언대로 하면 됩니까?

○이성윤 위원 예.

○소위원장 박범계 그다음에 ‘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는 검사·군검사는 특별검사에 파견된 것으로 본다’. 이건 아니지요, 이렇게 되면?

○이성윤 위원 파견된 걸로 보고 다만 숫자에는 포함되지 않는, 파견검사 수에는 포함되지 않는 걸로.

○소위원장 박범계 ‘파견된 것으로 본다’ 이것은 불필요한 것 같은데?

○이성윤 위원 뒤의 ‘다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다만’ 때문에? ‘2항에 따라 파견된 것으로 본다. 수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요.

○서영교 위원 ‘파견된 것으로 본다’가 좋은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박범계 그래요.

○서영교 위원 약간 지위도 있고 일하는 데 의미도 있고.

○소위원장 박범계 예.

차관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기본적으로 그동안 14건의 특별검사제도가 가동이 됐는데 모두 다 수사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이성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진행되는 공판까지 특검이 모두 다 인계받는 걸 전제로 하신 말씀인데 기본적으로 특검의 도입 필요성에 비춰 봤을 때 그 전제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두 번째 드릴 말씀은 특별검사제도라는 게 권력분립 원칙에 대한 예외기 때문에 정원도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0명이라고 하는 정원 자체를 형해화하는 측면이 좀 있다고 보이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면 검찰총장과 특수본부장의 지휘체계가 무너지게 되고, 어떻게 보면 소속은 해당 지검에 있는데 지휘 자체를 특검에 받는다고 하는 것은 권력체계상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웬만해야지 말이지요.

차장님, 말씀하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조 3·4·5항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사실은 일종의 공무상 비밀보다는 군사상 기밀, 국가안전보장상의 어떤 기밀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없지는 않은데 이 내란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위낙 높아서, 언론의 관심도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절충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저도 아주 오래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당시 때부터 여러 청문이라든지 관여를 해 왔고 법사위에서도 그렇게 해 와서 왕왕, 왕왕이 아니라 늘상 국가정보원장이 불허합니다. 전부 다 불허해요.

그런데 아까 서영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에 전직 국정원 차장이 나와 가지고 다 얘기했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특별히 군사상, 안보상에 어떤 위해가 발생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몇몇 부분들은 조금 지적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대세에는 지장이 없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무슨 제한 규정이 있다면, 그러니까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공개재판주의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지금 공개재판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거든요.

군사법원에서 진행된 것 혹시 차장님 아세요? 몰라요. 언론에 전혀 공개도 못 합니다,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국은 흘려 줘서 받아쓰는 그런 일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특정 언론만 단독을 한다든지, 그것이 검증된 기사인지도 확실치 않고 중인환시의 그런 어떤 투명성이 제고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 대안을, 지적하는 건 뭐 일리가 있다고 치더라도 대안이 뭐가 있겠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현행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심리의 공개와 관련해서만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법원조직법에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돼 있고요. 다만 그 이후에 단서 규정 비슷하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그 후단 부분을 좀 더 좁히는 형태로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의 대안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서영교 위원** 차장님, 금방 뭐뭐라고요? 국가의 안전보장 그다음에……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서영교 위원**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후단은 주로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비공개 결정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런데 우선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는 없는 것 같고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우선 위원장님 말씀처럼 김용현 재판 공개하고 있나요? 아까 군검찰만이 아니고요, 군사법원만이 아니라 김용현 재판 공개하고 있나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영교 위원**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법원에도 요청했는데요 김용현 재판이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노상원 재판 공개하고 있나요?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윤석열 재판은 앞부분 생중계를 해요. 그리고 기자들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김용현 재판하고 노상원 재판 그다음에 김용문이라고 있더라고요. 재판 더 많겠지요.

다 공개가 안 돼요. 기자도 안 들어가요. 이런 재판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지귀연이 하는 재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재판 공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게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서인가요? 아닙니다. 안녕질서를 위해서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검찰이 요구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검찰도, 법무부장관 이런 요구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김용현 재판이 공개 안 되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됩니까? 생중계는 떠나서라도 기자들도 안 들어가요.

우리가 윤석열 재판 공개해라, 공개해라, 생중계해라 그래서 앞부분 생중계 해 가지고 지귀연 재판부가 누구누구로 구성됐는지 그때서야 알았어요. 그리고 윤석열이 어디에 앉아 있는지 그때서야 알았어요.

법원 차장님, 윤석열 자리가 피고인석에 앉아야 돼요, 아니면 변호사 옆에 앉아야 돼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피고인석에 앉아야 됩니다.

**○서영교 위원** 피고인석에 앉아야 되는데 변호사 옆에 앉혀 놨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돼요, 안 돼요? 그것 독립된 재판부의 일이라고 판여 안 하시겠어요?

그래서 그게 그나마 열려서 한 건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 제가 현재를 물어보니까 현재는 그 안에서 녹화를 해서 부분적으로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다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의 예외 없는 공개, 안전보장과 안녕질서 이것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특검과 이야기해서 ‘이것 꼭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나는 그 정도는 충분히 특검이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것 다 해야 되고.

재판 중계의 원칙적 허가, 중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중계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현 법재판소처럼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녹화 당연히 떠 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재판도 물어보니까…… 녹화합니까, 안 합니까? 공개는 두 번째 치고.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우선 속기와 녹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영교 위원** 녹음을 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동안 녹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핸드폰 갖고도 다 녹화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검찰에서 검사 조사받는 경우에도 피의자가 원하면 다 녹화되잖아요. 이것은 피해자가 너무 많은 일들이잖아요. 녹화해야지요.

그런데 녹화라고 하는 건, 예전에는 제가 보기에는 녹화가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었는데요. 중계, 예전에는 중계차가 가야 됐지만 지금 다 중계 가능하잖아요. 요만한 핸드폰 갖고도 중계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 다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법원이 무조건 막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의견을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법원의 의견이 있었다는 것으로 하고 최대한의 국가의 안전보장 이 부분을 위해서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범위가 있는지를 보고 저는 이것 다 공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정원 같은 경우에 국정원 원장도 피의자입니다. 국정원 원장이 주요한 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 원장의 그 권한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오히려 국정원 기관장이 이것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이 안에 들어가

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동감이고요.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볼 때 내란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그러니까 완전히 무관한 국가안전보장상의 기밀사항이라면 모르겠는데 그것을 결정으로 공개를 못하게 되면 재판부가 공판에서 심리 전에 예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로 사건의 본안과 관계가 되는 건지 아닌 건지를 판단해야 될 거고, 제한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판단해야 될 거고 거기에 대한 소명이 일응 있어야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공판 절차에서 나와야 될 사항들이 사전 결정에 의해서 사전 판단이 되는 것 아닌가, 예단을 갖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군사기밀 내지는 어떤 공무상 기밀인가, 내란과 관련된 무엇이라도 예를 들어서 수방사라든지 특전사라든지 방첩사라든지 관련된 걸 다 포함하더라도, 국가정보원을 다 포함하더라도 이것 자체가 국정문란을 목적으로 군을 동원한 사안인데 그것이 보호돼야 할 기밀인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행정처 차장님이 고견을 주셨지만 저도 위원님들 의견하고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성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해서 통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지금까지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서영교 의원·정춘생 의원·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36)

(12시51분)

○소위원장 박범계 의사일정 6항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7페이지입니다.

오른쪽입니다.

제정안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상장회사 및 비상장회사의 주식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였다는 의혹 사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특별검사의 임명, 결격사유 및 정치적 중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교섭단체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속된 적이 없는 정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교섭단체가 2인의—각 1인입니다—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후보자 중 1인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4조는 특별검사의 결격사유로 단서에 상설특검법에 따라 임명되어 이 법의 범죄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 예외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특별검사 등의 권한 및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가 후보자 8인을 임명 요청하고 대통령이 4인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수사관은 80인 이내에서 특별검사가 임명하고 파견검사 40인 이내, 파견공무원 80인 이내에서 특별검사는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제4항은 특별검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열람·사본제작 및 자료 제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수사기간 및 재판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원칙 90일, 연장 30일, 재연장 30일이고 재판기간은 1심 6개월 이내, 2심 3개월 이내, 3심 3개월 이내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는 특별검사의 보수·퇴직·해임·신분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3조, 부칙은 재판관할·이의신청·별칙 및 부칙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안 제20조는 상설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가 이 법의 범죄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에게 그 사건과 인력을 인계하도록 하고 있고, 아래 안 제20조제3항에서는 제2조제1항 각 호에 명시된 수사대상이 상설특검법에 의해 임명된 다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과 중복되는 경우 특별검사 상호 간 협의하여 관할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관계 기관 의견 주십시오.

○**법무부차관 김석우**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던 2개의 특검 법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동일한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특검 법안이 마지막 법안이라서 제가 특검 임명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특검 법안을 비롯해서 3개 특검 법안의 기본적인 문제점이라고 저희가 보는 것은 추천 방식입니다. 추천 방식에 있어서 대통령이 소속돼 있었던 정당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헌법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전 국민을 대표합니다. 그러면 물론 소속 정당에 귀속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정치 현실의 문제고 전 국민 대표성은 어떤 헌법 규범의 문제인데 이 법안과 같이 대통령이 소속돼 있던 정당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특검 추천 방식에 전혀 관여하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헌법 규범보다 정치 현실을 우선시했다는 측면에서, 헌법 규범적 측면에서 발휘가 돼야 되는 국회의원의 대국민 대표성이라는 부분이 헌법적으로 그 취지가 많이 퇴색됐다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차장님.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법원행정처에서는 입법정책적 결정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위원님들 다른 것 토론보다 지금 차관이 얘기한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지요.

지금 이 법안 서영교 의원님이 대표발의도 하셨는데 이 법안 중에 지금 차관이 지적한 정당……

○**법무부차관 김석우** 이 부분은 3개 특검 법안에 공통적으로 있는 건데 마지막 특검 법안이라 제가 보완설명해 드린 겁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그러면 통과시켰으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이 부분의 고유한 건 아닙니다. 공통된 부분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그러네.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지금?

○**법무부차관 김석우**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전적으로 추천 과정에 배제되는 것은 어떤 전 국민의 대표성이라고 하는 헌법적 규범이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의 지위에 비춰 봤을 때 헌법적 논란이 있다는 측면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통상 당적을 가진 자이거나 가졌던 자는 배제되게 돼 있잖아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그런데 제 말씀은 이 특검 법안의 추천을 하는 그게 구 여당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 자체가 헌법적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부연설명 드렸던 겁니다.

○**박균택 위원**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관님, 이 법이 도입되는 것이 싫어서, 수사 진행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퇴장한 모습들 봤지요? 저분들이 추천권을 갖는 게 맞습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다만 지난번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결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헌법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 현실에 우선해야 되는데 정당의 귀속성을 헌법 규범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기본적인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박균택 위원** 수사의 편파성 그다음에 이런 의혹 그다음에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있

어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인데, 특정 정당의 의원님들이 이 수사를 반대하고 방해하고 저렇게 퇴장까지 하는 분들인데 저분들한테 추천권을 주라는 그 의견은 타당치는 않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현실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위원장 박범계** 수고하셨습니다.

차관님, 제가 판사를 할 때부터 잘 훈련된 히어링 능력이거든요. 그것은 아주 뛰어난,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래서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국회 국방위에서 했던 그것을 제가 다른 일을 하면서도 귀로 들은 그 일,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서, 그런데 차관님 말씀은 귀에 잘 안 들려요. 차관이시기도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너무 심했나 하는 생각도 들고, 마치는 마당에. 말씀을 잘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십시오.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지요?

○**서영교 위원** 제가 의견 마지막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아니, 잠깐만요.

답 안 해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발전이 있지 않을까요?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우선 김건희, 명태균 그리고 건진법사 관련한 법안입니다.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서영교 위원** 김건희 여사 관련한 것은, 대통령 부인이지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서영교 위원** 주가조작 등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저쪽 당이 계속 무혐의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명태균 케이트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일부 연루되어 있는 의혹이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국민의힘에서 말하기를 어떻든 권성동 등 전부 다 그리고 박준태 의원이 나와서 대정부질문 현장에서 ‘국힘당 케멸법’이라 그랬어요. 그렇지요? 거기에 다 연루가 돼 있어요.

건진법사는 어떻습니까? 윤한홍, 권성동,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연루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다 특검을 추천하는 권한을 줄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고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때 그리고 드루킹 때 그리고 이명박 내곡동 사저 특검 등 전부 다 대통령이 속했거나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당이 추천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래서 위헌이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동안.

○**법무부차관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서 문제 제기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동안 다 해 왔고.

지금 왜 꼭 이렇게 하는데요? 채수근 상병 관련한 것은 누가 연루돼 있어요? 윤석열이 연루돼 있어요. 800-7070은 누구 번호예요? 윤석열인지 김건희인지 그렇잖아요. 주진우 의원도 마찬가지로, 여기 없으니까 내가 이야기하는데 그때 법률비서관 아니에요. 전

부다 거기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란은요? 여기 다 관련되어 있잖아요. 김·명·건 다 관련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제 그동안 했던 것을 돌아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꼭 정당 이것 떠나서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관여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자꾸 이상한 논리 제기하지 마시고요. 그 부분도 다 나중에 평가받을 일이고 책임지셔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최순실 국정농단 때, 드루킹 때 그리고 내곡동 사저 때 그때는 그래도 관련되어 있던 당들이 일정 부분 인정해 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관련되어 있으면서 계속 방어망을 지금까지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이 오는 거고. 진즉진즉에 이렇게까지 방어하지 않았으면,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거기에 법무부의 법무부차관이 또 법무부장관이 참 많이 기여했다고 제가 이렇게 기록해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박범계**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차관 김석우** 위원장님, 서영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추가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다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거니까 답변하실 것도 없어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아니, 설명할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먼저 다 하신 것에 대한 제 지적이에요.

○**법무부차관 김석우** 아까 세 가지, 내곡동 사저, 드루킹 특검, 박근혜 대통령 특검은 3개 특검 모두 당시 여당이 배제된 것은 맞는데 여야 합의가 있었다는 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공정성 논란이 있어서 특검이 도입됐다면 최소한 추천 과정에서 객관적인 공정성 논란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공정성 논란 때문에 일부 정당을 배제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서영교 위원** 공정성 논란이 무슨 공정성 논란이라는 거예요?

○**소위원장 박범계** 됐습니다. 과거에도……

○**서영교 위원**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변호사를 추천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소위원장 박범계**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객관적인 추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호도하시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호도 맞습니다. 수차례 했던 내용이고.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희승 위원** 잠깐,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식사 시간이 다 됐는데……

지금 전성배라는 사람을 자꾸 ‘법사’라고 외치는데, 최근에 부처님 오신 날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 사람 법사 아닙니다, 이 사람 무속인이고.

○**서영교 위원** 사기꾼이지요, 참.

○**박희승 위원** 2000년대 판결문을 보면 건진을 ‘무속인’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차관님도 들어 보셨습니까?

○**법무부차관 김석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희승 위원** 정말 참선하고 도를 닦는 스님들 입장에서는 건진 같은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부정수표 사용, 사기 등으로 여러 범죄를 저질러 왔고 건진 전성배를 무속인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식품업체를 운영하다가 35억 원 정도 부도를 냈고 주변에 대학 건설공사, 강원도 국립공원 리조트 개발 내세우면서 사기 쳤고 감귤농축액 등 식품첨가물을 납품받는데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직원들에게 1억에 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아주 파렴치한 잡범입니다. 앞으로 ‘법사’라는 용어는 쓰면 안 되고 전성배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건 부처님 오신 날에 마치 스님을 육보이는 듯한 발언이어서 정정을 요구하려고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서영교 위원** 아니, 금방 말씀처럼 법사를 빼고 가시면 어떨까요? 건진으로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건진(전성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사를 빼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부터 ‘건진(전성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균택 위원** 차라리 그러면 그냥 ‘무속인 건진’이라고……

○**서영교 위원** 아니, 무속인도, 사실 무속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그냥 건진(전성배)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이미 사람들에게 수년째 통용된 개념이 돼 버렸고 그것이 갖는 사람에 대한 특성, 성격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드러내는 거라 설사 불교계에서 법사가 그렇게 쓰이기는 하지만 이미 사회적 용어가 되지 않았나.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 주는, 특검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제목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인데 위원님들 네 분이 다 같으시면……

○**박균택 위원** 아닙니다. 저는 유지에……

○**소위원장 박범계** 전성배라고 하는 순간……

○**박희승 위원** 건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박균택 위원** 그래도 저는 유지에 찬성하는 게, 저는 전광훈 같은 사람을 목사로 인정을 안 하는데 남들이 ‘전광훈 목사’라고 부르는 것을 기독교인으로서 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조차, 목사도 참고 있는데……

○**박희승 위원** 그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 같습니다, 목사는 맞고 그런데 변질이 돼서 그렇지.

○**박균택 위원** 물론 남의 특정 직업군을 모욕하는 그 현상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저도 참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그러면 네 분 다 명칭을 바꾸는 것……

○**서영교 위원** 예.

○**박희승 위원** 저는 건진하고 전성배……

○**소위원장 박범계** 이성윤 위원님은?

○**이성윤 위원** 저는 명칭보다는 ‘건진법사(전성배)’ 하면 어떻습니까?

○**소위원장 박범계** 법사를 쓰지 말자는 취지예요, 박희승 위원님은.

○**박희승 위원** 예, 스님을 육보이는 말입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대표발의한 사람인데, 원래 ‘건진’으로 왔었는데 ‘건진(전성배)’로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법사라고 하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차별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건진(전성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균택 위원** 그래도 저는…… 그러면 ‘무속인’이라는 말로 바꿔 주십시오.

○**서영교 위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많은 무속인들이……

○**이성윤 위원** 무속인도 사실은……

○**박희승 위원** 종교인이니까요.

○**소위원장 박범계** 그것은 아닌 것 같고.

○**박균택 위원** 그러니까 나쁜 것이 아니면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요. 목사도 나쁜 단어가 아니라 제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박범계** 박균택 위원님은 의견이 또 다르니까 그냥 원래의 명칭대로, 대표발의자가 하신 대로 그냥 할까 싶어요.

○**서영교 위원** 대표발의자가 법사를 빼고 가자고 얘기하는 건데……

○**소위원장 박범계** 저는 반대한다니까요.

○**서영교 위원** 예, 그러면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이 법사는……

○**박희승 위원** 그러면 속기록에 남겨 놓으시지요.

○**소위원장 박범계** 당연히 속기록에 남아 있지요.

○**서영교 위원** 속기록에 이 법사는 그런 걸로, 상징적으로 나쁜 짓을 했다는 의미로.

○**소위원장 박범계**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저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우 차관, 배형원 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이렇게 많이 시간 끌어서. 시장하실 텐데 여러 가지로 미안한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보좌진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속기사 여러분도 미안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산회)

---

○**출석 위원(8인)**

박균택 박범계 박희승 서영교 유상범 이성윤 장동혁 주진우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환철

전문위원 김성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차관 김석우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차장 배형원